

기본연구보고서 2009-16

# 대전지역 지적장애인의 복지증진대책에 관한 연구

장 창 수





## 연구진

연구책임

- 장창수 /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 발 간 사

산업화, 도시화, 인구 고령화와 같은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하여 장애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의 등록 장애인 수는 2000년 27,079명에서 2008년 말에 64,348명으로 2000년 대비 약 2.3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장애범위가 확대되면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애인 중에서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지적장애 인구도 2008년 12월 4,124명으로 2003년 2,920명 대비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사회는 가족구조가 핵가족화 되면서 가족의 기능이 더욱 약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중에 장애인이 출연하면 부모를 포함한 가족들은 심리적,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지적장애인은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곤란하여 가족들은 평생 동안 장애인을 돌보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최근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지적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가 대전광역시에서 지적장애인 복지시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연구 수행과정에서 자문 및 설문조사를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대전해광학교 김근중 교감선생님과 대전원명학교 유지운 교감선생님,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장인국, 여광조, 권용명원장님, 장애인종합복지관 김아영부장님과 이채은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설문조사에 적극 참여해주신 지적장애인 부모 등 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 11

대전발전연구원장 유 병 로



# 요약 및 정책건의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현대사회가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되면서 가족의 부양기능이 약화되고 있음. 따라서 가족 중에 장애인이 발생하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부모를 포함한 부양가족들은 커다란 심리적 불안정 속에 놓이게 되며, 급변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됨.
- 전체 장애인 중에서도 특히 지적장애인은 변별력, 판단력, 창의력 등의 발달이 불완전하여 개인의 일상생활처리능력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의 적응이 곤란하여 부모 등 가족에게 장기적으로 의존하게 되므로 가족의 부양부담이 매우 높음. 그러나 이와 같이 지적장애인과 그 가족의 부양부담이 과중하고 복지욕구가 높지만 이에 대한 복지대책은 매우 미흡한 실정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적장애인의 양육, 교육, 보호, 치료실태와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 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2. 연구 결과

- 특수학교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적장애인 3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임.
- 일상생활 동작능력은 87.3%가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현재 거주 형태는 93.9%가 가족과 함께 집에서 생활하고 있음.
- 대체적으로 본인의 주관적 생활수준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지적장애 자녀를 돌보면서 가장부담이 되는 비용은 장래에 발생할 비용, 치료비 등임
- 지적장애 자녀를 가장 많이 돌보는 주보호자는 ‘어머니’ 84.1%이며, 건강상태가 나쁘다는 의견이 31.8%임.
- 지적장애 자녀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어려움은 ‘사회활동의 부족’이 69.8%, ‘여가활동의 부족’이 57.1%, ‘대인관계의 축소’가 54.0%, ‘타

인의 인식부족' 이 50.8%, '사회적 차별' 이 42.5%, '지지집단의 부족' 이 27.6% 등임.

- 지적장애 자녀로 인하여 경험하는 가족의 어려움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이 77.1%, '자녀의 직업 및 취업문제' 는 57.5%, '사회적 차별과 인식부족의 문제' 가 57.5%, '보호로 인한 심적 스트레스' 가 56.8%, '비장애 형제에 대한 염려와 미안함' 이 55.9%, '보호자의 여가 및 사회활동 부족' 과 '경제적 부담' 이 각각 53.3%, '자녀의 결혼문제' 가 41.0%, '자녀에 대한 지식 부족' 이 24.1%, '부부간 갈등의 문제' 가 22.2% 등의 순서임.
- 지적장애 자녀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위치확인시스템을 구축이 '필요하다' 는 응답이 94.0%로써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음.
- 지적장애 자녀로 인해 차별 대우를 경험은 '보험계약시' 에 77.1%, '유치원, 학교 입학시' 에 차별을 '받았다' 는 응답률이 55.6%, 일상가족생활(친척, 이웃과의 관계)에서 49.2%, '학교생활(교사, 학우 등)에서 46.0%, '대중교통(버스, 전철, 택시 등)이용 시' 에 35.6%, '사회생활(식당, 공연장, 상가 등)이용 시' 에 41.9% 등의 순서로 나타남.
- 지적장애 자녀의 미래에 대한 준비는 '아무런 준비를 못하고 있다' 가 55.6%, '일상적인 생활기술 습득하는데 주력한다' 가 47.9%, '재정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가 30.8%, '미래의 보호자를 정해주었다' 는 응답이 9.5%, '자녀가 거주할 곳을 준비해 두었다' 가 5.7%의 순서임.
- 지적장애 자녀의 미래와 관련하여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부모 사후문제' 가 77.8%, '일상생활 지원문제' 64.8%, '장래 재정문제' 63.2%, '직업 및 취업문제' 62.9%, '건강악화 문제' 가 41.3%, '주거문제' 40.6%, '결혼' 이 40.3%의 순서로 나타남.
- 지적장애 자녀의 미래와 관련한 재정준비 '전혀 준비를 하지 못했다' 가 55.9%, '적금이나 예금을 들었다' 가 23.8%, '보험이나 연금에 가입했다' 가 18.1% 등 순으로 나타남.
- 부모 사후에 선호하는 생활형태는 '자녀에게 적합한 시설의 도움을 받으면 살게 하겠다' 가 49.2%, '결혼을 시켜서 배우자와 살게 하겠다' 가 19.4%, '형제·자매와 함께 살게 하겠다' 가 11.4%, '마음에 맞는 친구나 동료와 함



께 살게 하겠다' 가 10.2%, '필요한 서비스 받으며 혼자 살게 하겠다' 가 9.8%의 순서를 보임.

- 부모 사후에 선호하는 시설은 '그룹홈' 이 46.7%, '생활시설' 21.6%, '준 독립아파트' 가 11.7%, '지역사회 격리 복지마을' 8.6%, '요양시설' 4.4%, '위탁가정' 4.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부모 사후에 자녀의 생활을 지원하는 성년후견인제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92.5%이며, 선호하는 후견인은 '형제·자매' 가 37.5%, '장애인 관련 단체' 가 22.2%, '법조인' 이 13.3%, '시설이나 시설관계자' 가 12.7%, '기타(종교단체, 자원봉사자 등)' 가 10.7%임.
- 지적장애인 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욕구를 Likert(리커트) 4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 이 3.59점, '의료지원서비스' 는 3.54점, '각종재활치료' 가 3.42점, '정보제공 및 상담' 이 3.32점, '권익증진서비스' 가 3.28점, '가족의 휴식서비스 제공' 은 3.23점, '외출 시 이동서비스' 는 3.19점, '부모 역할 훈련' 은 3.10점, '장난감 및 교구, 보조 장비 등 양육에 필요한 내용 지원' 이 2.95점, '가족상담' 은 2.99점, '장애자녀 이성교제상담 및 자녀 결혼상담' 과 '사례관리' 가 각각 2.93점의 순으로 나타남.
- 대전광역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지적장애인복지사업 '보호작업장 등 취업기회의 확대' 가 60.3%, '성인지적장애인 그룹홈, 주간기보호시설 확충' 이 51.1%, '기본생활비 보조' 가 42.9%, '지적장애인복지관 설립' 이 41.0%, '지적장애인 지원조례 제정' 이 30.2%,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가 23.5%, '지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이 20.6%, '후견인제도 도입' 이 13.3%의 순으로 나타남.

### 3. 정책 제언

#### 1) 지적장애인 취업기회 확대

지적장애인의 사회적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기업을 확대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을 확대시키기 위해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안내 및 운영지원에 대한 컨설팅 등 사회적기업 지원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한편으로 직업재활시설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직업재활시설의 일거리 발굴을 위해 지역기업체 초청 간담회 개최, 직업재활시설과 기업체의 자매결연, 틈새직종 및 품목 개발 등이 필요하다. 또한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는 지역의 사회적기업 및 직업재활시설과 생산제품 우선구매 및 판매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이들 기업을 지원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 **2) 성인 주간보호시설 확대 설치**

지적장애인 가족의 항시 보호부담 경감으로 가족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활동 및 경제활동을 참여할 수 있도록 주간보호시설을 확충해야 함. 대전지역은 성인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수요가 높는데 반하여 대부분 아동주간보호시설임. 따라서 기존 서비스에 직업관련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등 실질적인 자립생활 촉진이 가능한 성인 지적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3)공동생활가정 시설 확충**

본 조사에서 가장 선호하는 시설이 공동생활가정임. 공동생활가정은 탈시설화와 정상화이론에서 비롯된 시설로 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가정과 보다 가까운 환경을 제공하고 이용자의 사회적 자립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주거 형태의 하나임. 향후 공동생활가정을 양적으로 확충하고 다양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을 공동생활가정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4) 사회복지관의 지적장애인 프로그램 특성화**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장애인복지관의 낮은 접근성과 이용자들이 많아 대기 시간과 기간이 길어서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실정임. 장애인복지관 미설치 지역 종합사회복지관에 지적장애인 프로그램을 특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장애인복

지관이 장애인복지사업 수행의 중심센터가 되고, 사회복지관은 센터의 지원을 받아 장애인프로그램 수행할 수 있음.

## 5) 지적장애인 전용복지관 건립

전문화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지적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여 상담지도사업, 방과후 교실, 가족지원사업과 함께 성인기 지적장애인을 위한 직업적응훈련, 취업 알선, 구인구직상담, 결혼상담 등 개인의 특성과 생애주기에 맞는 전문교육과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그들이 잠재능력을 충분히 발휘해 지역사회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6) 지적장애인 지원조례 제정 검토

학령기를 지나 성인이 되면 오갈 곳이 없어 평생 동안 지원이 필요함. 중증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소규모 형태의 능력별, 수준별로 다양한 지원시설을 확대 신설하여 지원하는 ‘대전광역시 지적 장애인 지원조례’ 추진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7) 지적장애인 위치 확인시스템 구축

지적장애인의 안전보호와 실종을 예방하기 위하여 위치 확인시스템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지적 및 자폐장애인과, 치매노인 등을 대상으로 위치 확인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소요예산을 확인한 결과, 관재시스템 구축에 17,500만원, 1인당 단말기 구입비 15만원, 통신비 월1만원이 소요됨. 대전광역시의 경우 단기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장애인부터 지원하고 추후에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며, 일반 장애인은 실비로 위치 추적서비스를 제공함.

## 8) 가족단위의 상담시스템 구축

지적장애인이 가족구성원이 되므로 인해 가족들은 다양한 심리·정서적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에 항시적인 우울, 불안, 위축감 등의 심리적 고통을 갖게 됨. 주부호자인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들도 낮은 자존감, 우울증을 경험하기도 함. 형제·자매의 경우도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역할을 하도록 기대 받고 부정적인 감정표현을 못함으로써 내적 갈등을 경험하기도 함. 따라서 지금까지 주로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되어 오던 상담을 아버지와 형제, 조부모를 포함한 가족단위로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9) 성년후견인제도 의견수렴

우리 지역에서도 법률의 개정 또는 특별법의 제정으로 검토하게 될 성년후견인 제도가 직접 당사자인 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본인 보호의 이념’은 물론 ‘자기결정권의 존중’ ‘잔존능력의 활용’ ‘정상화’ 등의 이념이 적극 반영된 성년후견 법률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책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직접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 10) 인식개선사업 추진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 본 조사에서 여전히 차별대우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지적장애인과 가족을 자주 접촉하는 의료진이나 교사,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지적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한편 장애체험행사, 장애인 이해 책자 발행, 캠페인, 공익광고 시행 등 지속적인 홍보와 활동으로 지적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음.

# - 목 차 -

□ 요약 및 정책건의 .....	I
<b>제 1 장 서 론</b> .....	3
제1절 연구배경 .....	3
제2절 연구목적 .....	4
제3절 연구방법 및 구성 .....	5
<b>제2장 문헌고찰</b> .....	9
제1절 지적장애인의 개념 및 분류 .....	9
제2절 지적장애인 현황 및 특성 .....	10
제3절 장애인복지시설 및 사업 추진현황 .....	12
제4절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평가 .....	23
<b>제3장 연구설계</b> .....	27
제1절 조사대상자 표집 및 자료수집 .....	27
제2절 조사내용 .....	29
제3절 자료분석 .....	30
<b>제4장 조사결과 분석</b> .....	33
제1절 지적장애인 가족의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	33
제2절 지적장애인복지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	65
<b>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b> .....	71
제1절 주요 조사내용 요약 .....	71
제2절 정책제언 .....	76
<b>참고문헌</b> .....	82
<b>부 록</b> .....	83

## - 표 목 차 -

<표 2-1> 지적장애인 등급판정표 .....	9
<표 2-2> 대전광역시 장애인 등록 현황 .....	10
<표 2-3>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	12
<표 2-4> 대전광역시 장애인 생활시설 현황 .....	13
<표 2-5> 대전광역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현황 .....	14
<표 2-6>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관 현황 .....	15
<표 2-7> 대전광역시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현황 .....	16
<표 2-8> 대전 권역별 재활병원 공간 배치 계획 .....	16
<표 2-9> 대전광역시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현황 .....	18
<표 2-10> 대전광역시 특수학교 현황 .....	19
<표 2-11> 대전광역시 장애인 특수학급 현황 .....	19
<표 2-12> 대전광역시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사업 지원 현황 .....	22
<표 2-13> 대전지적장애인가립지원센터 현황 .....	22
<표 2-14> 지적장애인의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인지도 · 이용율 · 만족도 .....	24
<표 3-1> 지적장애인 시설별 표본 추출 및 조사 장애인 수 .....	27
<표 3-2> 지적장애인 가족 설문조사 영역 및 항목 .....	29
<표 4-1> 일반적인 특성 .....	33
<표 4-2> 일상생활 동작능력 .....	35
<표 4-3> 거주형태 .....	36
<표 4-4> 주관적 생활수준 .....	37
<표 4-5> 추가 교육 및 양육비용 .....	39
<표 4-6> 생애주기별 가장 부담이 되는 비용 .....	40
<표 4-7> 장애등급별 가장 부담이 되는 비용 .....	42
<표 4-8> 후보호자 .....	43
<표 4-9> 후보호자의 건강상태 .....	44
<표 4-10> 생애주기별 사회적 어려움 .....	46
<표 4-11> 생애주기별 가족의 어려움 .....	47
<표 4-12> 생애주기별 지적장애인 위치확인시스템 설치 필요성 .....	49

<표 4-13> 장애등급별 지적장애인 위치확인시스템 설치 필요성 .....	50
<표 4-14> 차별대우 경험 여부 .....	51
<표 4-15> 생애주기별 지적장애 자녀의 미래계획 준비 .....	52
<표 4-16> 생애주기별 자녀의 미래관련 염려스러운 부분 .....	54
<표 4-17> 자녀의 미래관련 재정준비 .....	56
<표 4-18> 부모 사후에 선호하는 자녀의 생활형태 .....	57
<표 4-19> 부모 사후에 도움 받는 경우 선호하는 시설 .....	59
<표 4-20> 성년 후견인 제도의 필요성 .....	60
<표 4-21> 생애주기별 선호하는 후견인 .....	61
<표 4-22> 가족을 위한 서비스 이용욕구 .....	62
<표 4-23> 대전광역시의 지적장애인복지사업 우선순위 .....	63

## - 그림 목 차 -

[그림 1-1] 연구체계도 .....	6
[그림 4-1] 일상생활 동작능력 .....	36
[그림 4-2] 거주형태 .....	37
[그림 4-3] 주관적 생활수준 .....	38
[그림 4-4] 추가 교육 및 양육비용 .....	39
[그림 4-5] 생애주기별 가장 부담이 되는 비용 .....	41
[그림 4-6] 주보호자 .....	43
[그림 4-7] 주보호자 건강상태 .....	45
[그림 4-8] 생애주기별 사회적 어려움 .....	46
[그림 4-9] 생애주기별 가족의 어려움 .....	48
[그림 4-10] 차별대우 경험 여부 .....	51
[그림 4-11] 생애주기별 지적장애 자녀의 미래계획 준비 .....	53
[그림 4-12] 생애주기별 자녀의 미래 관련 염려스러운 부분 .....	55
[그림 4-13] 자녀의 미래관련 재정준비 .....	56
[그림 4-14] 부모 사후에 선호하는 자녀의 생활형태 .....	58
[그림 4-15] 부모 사후에 도움 받는 경우 선호하는 시설 .....	59
[그림 4-16] 생애주기별 선호하는 후견인 .....	61
[그림 4-17] 대전광역시의 지적장애인복지사업 우선순위 .....	63



# 제 1 장

---

## 연구의 개요

.....  
제1절 연구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방법 및 구성  
.....



# 제 1 장 서 론

## 제1절 연구배경

급속한 사회변화와 함께 장애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전광역시의 2000년 등록 장애인 수는 27,079명이었으나 2008년 59,978명으로 불과 8년 사이에 2.3배가 증가하였다. 대전광역시 전체 인구에서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2000년 1.9%에서 2003년 2.8%, 2005년 3.5%, 2008년 4.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등록 장애인이 증가한 원인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2000년 1월부터 장애의 범주가 기존의 5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되었으며, 2003년 7월부터 10종에서 15종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산업재해, 교통사고 증가 및 인구고령화로 인한 장애인구 증가 등으로 장애인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장애 인구 증가와 함께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제도는 심신장애인복지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양적·질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많은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현대사회가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되면서 가족의 부양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출현은 한 가족에게 있어서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가족 중에 장애인이 발생하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부모를 포함한 부양가족들은 커다란 심리적 불안정 속에 놓이게 되며, 급변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전체 장애인 중에서도 특히 지적장애인은 뇌의 손상으로 변별력, 판단력, 창의력 등의 발달이 불완전하여 개인의 일상생활처리능력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의 적응이 곤란하여 부모 등 가족에게 장기적으로 의존하게 되므로 가족의 부양부담이 매우 높다. 최근 들어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자 지금까지 소외되어 왔던 지적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지적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지역사회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은 지적장애인이 사회 속에서 분리되어 생활하기 보다는 사회의 통합적인 부분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는 것이고 사회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유를 제한하는 일련의 제한적이고 차별적인 행동을 없애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선현철, 2008).

대전시 전체 장애인의 7.3%(3,823명)를 차지하고 있는 지적장애인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자립을 도모할 수 있으나 그 성과는 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평생 동안 가족이 장애인을 돌보아야 하는 어려움으로 가족 구성원은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으로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며, 더욱 심화되면 가족해체 등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즉, 지적장애인 가족은 지적장애인의 양육, 교육, 직업재활, 사회활동을 유지할 수 있게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주변의 동정과 사회적 편견을 이겨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지적장애인과 그 가족의 부양부담이 과중하고 복지욕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복지대책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 제2절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지적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지적장애인의 양육, 치료, 교육, 복지관련 제반서비스, 사회활동 실태와 이들에 대한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지적장애인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즉, 지적장애인의 양육, 교육, 보호, 치료실태와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 실천방안을 제시하는데 기본적인 연구목적들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적장애인의 일상생활동작능력, 양육, 치료, 보호, 교육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지적장애인 가족의 부양부담 정도, 차별경험 여부, 장애자녀의 미래계획, 가족지원서비스 및 복지시책에 대한 욕구를 분석해 본다.

셋째,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적장애인 가족의 양육 부담 경감 및 해소와 지적장애인의 자립·자활능력 향상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애인복지 실천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제3절 연구방법 및 구성

###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문헌연구와 현장조사연구로 나누어 진행했다.

#### 1) 문헌연구

문헌연구에서는 지적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장애인복지제도 관련 기초자료, 연구자료, 학술논문, 신문기사와 인터넷 자료 등 다양한 자료들을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 2) 조사연구

조사연구는 지적장애인가족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를 실시했으며, 지적장애인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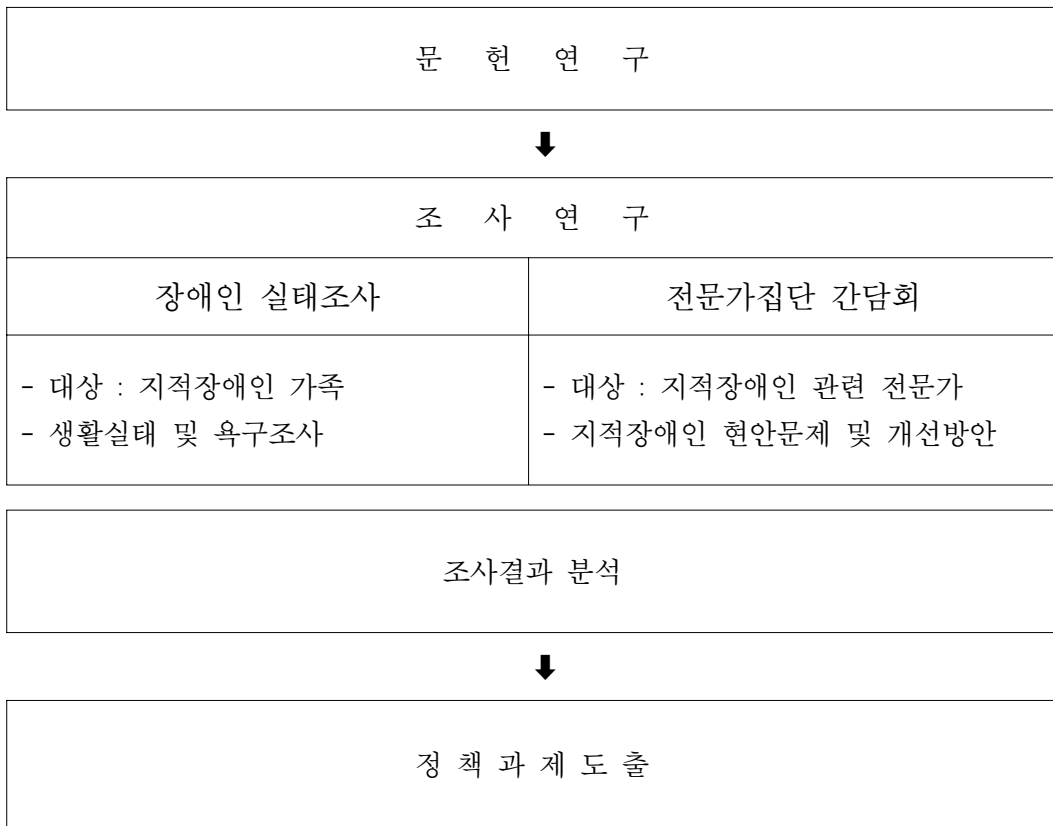
먼저, 지적장애인가족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는 기관별 할당표집(quota sampling) 방법을 활용하여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특수학교 재학 지적장애학생,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 지적장애인, 보호작업장 등에 근무하는 지적장애인의 부모 등 보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둘째, 대전 지역 지적장애인복지 관련 전문가 중심으로 자문위원을 구성하여 지적장애인 현안문제와 대안 모색에 대한 간담회 개최로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 2. 보고서의 구성

본 보고서는 제 5장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배경과 목적, 그리고 연구방법과 구성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제2장은 문헌연구로 지적장애인의 개념과 분류, 지적장애인 현황과 특성, 지적장애인복지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3장은 연구설계로 조사대상자 및 자료수집, 조사방법 및 자료분석, 조

사내용 등이다. 제4장에서는 실증적 조사연구로서 먼저 실태조사를 통한 지적장애  
인 가족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조사자료를 분석하였다. 둘째, 지적장애인복지 관  
련 전문가 중심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적장애인 현안문제와 대안을 모색하였  
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전반적인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적장애인복지대책에 관한  
제안으로 결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체계를 도식화하면 [그림 1-1]과 같다.  
각각의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1-1] 연구체계도

## 제 2 장

---

### 문헌고찰

.....  
제1절 지적장애인의 개념 및 분류

제2절 지적장애인 현황 및 특성

제3절 장애복지시설 및 사업 추진현황

제4절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평가  
.....





## 제2장 문헌고찰

### 제1절 지적장애인의 개념 및 분류

#### 1. 지적장애인의 정의 및 분류

##### 1) 지적장애인의 정의

2007년 10월12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정신지체장애인을 지적장애인으로 명칭하도록 개정하였다. 동법시행령 제2조에 지적장애인(知的障礙人)이란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정신발달이 불완전하여 지능이 평균 이하로 저하되고 이로 인해 자신의 신변처리와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 2) 지적장애인의 분류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2항에 따른 지적장애인 장애 등급 판정기준은 아래 <표 2-1>과 같다.

<표 2-1> 지적장애인 등급판정표

등 급	장 애 정 도
1급	지능지수가 34 이하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평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2급	지능지수가 35이상 49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3급	지능지수가 50 이상 70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 제2절 지적장애인 현황 및 특성

### 1. 지적장애인 등록현황

대전광역시의 장애인 등록 인구는 2008년 12월 31일 현재 64,348명으로 대전시 전체 인구 대비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등록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이 6.4%(4,124명)이다. 장애 등급별로 살펴보면 지적장애 1급이 1,348명, 2급이 1,512명, 3급이 1,264명으로 지적장애는 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로 되어 있다. 이는 2003년에 등록한 지적장애인 2,920명에 비해 42%(1,204명) 증가한 것으로 매년 지적장애인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대전광역시 장애인 등록 현황

(단위 : 명, %)

구 분	계	비율	등 급 별					
			1급 (10.0%)	2급 (15.2%)	3급 (17.3%)	4급 (12.9%)	5급 (19.8%)	6급 (24.8%)
계	64,348	100.0	6,419	9,786	11,097	8,319	12,708	16,019
지 체	33,601	52.2	1,223	2,315	4,376	5,795	9,505	10,387
뇌병변	7,279	11.3	2,065	1,987	1,829	615	430	353
시 각	6,566	10.0	898	210	360	320	553	4,225
청 각	6,244	9.7	144	1,158	1,073	1,123	1,692	1,054
언 어	367	0.6	0	31	173	163	0	0
<b>지 적</b>	<b>4,124</b>	<b>6.4</b>	<b>1,348</b>	<b>1,512</b>	<b>1,264</b>	<b>0</b>	<b>0</b>	<b>0</b>
자폐성	494	0.8	191	234	69	0	0	0
정 신	2,471	3.9	302	956	1,213	0	0	0
신 장	1,530	2.4	93	1,155	0	6	276	0
심 장	356	0.6	16	60	274	1	5	0
호흡기	424	0.7	97	99	228	0	0	0
간	215	0.3	33	36	56	1	89	0
안 면	68	0.1	3	8	34	23	0	0
장루,요루	326	0.5	0	4	29	135	158	0
간 질	283	0.4	6	21	119	137	0	0

자료 : 대전광역시(2009), 내부자료 재구성.

## 2. 지적장애인의 특성

지적장애인은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 1) 동기유발부족

지적장애인들은 학령기에서부터 자주 실패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를 미리 예상한다. 즉, 실패의 쓴 경험에서 도피하기 위해 그들은 실패를 야기하는 상황을 피하는 경향을 보이며, 결과적으로 자기성취 예언과 목표를 낮게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Zigler, 1973). 학업을 성취하지 못하거나 성공감과 만족감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나 대상을 피하고 싶어한다. 그것이 결국 동기유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 2) 의존적인 경향

지적장애인들은 문제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으로, 이는 곧 그들 자신의 능력을 불신한 결과이다. 이런 유형의 말들은 교사나 조력자, 동료아동의 도움을 요구하는 의존경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 3) 부정적 자아개념

선행연구에 의하면 지적장애인들은 열등한 자아개념을 가진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과 잠재성에 대해 부정적이다. 이런 부정적 자아개념은 생활에의 부적응과 중요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 4) 사회 행동적 특성

지적장애인들이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여러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적응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기 지향성, 책임감, 사회적 기술 등이 부족하여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주위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Gattlieb Budoff, 1973), 이러한 거부는 일반아동들이 교과학습의 무능보다 행동의 부적절성을 더 의식하는 데서 비롯된다(Gottlieb Semmel & Veldman, 1978).

---

1) 서울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http://www.seoulidd.or.kr/>)에서 재인용.

### 5) 말과 언어의 지체

말과 언어의 발달은 지적발달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장애인들은 일반인보다 말과 언어에 더 많은 곤란을 보인다. 특히, 음의 대치와 생략 같은 조음장애가 자주 발생하고 그들은 구어발달의 지연, 제한된 어휘, 그리고 정확하지 않는 문법사용 등을 포함한 언어장애를 갖는 것이 보통이다. 언어기능과 기술은 지적장애아들이 사회에 완전히 통합되기 위해 극복되어야 할 가장 큰 장애 중의 하나이다(Polloway &Smith, 1982).

## 제3절 장애인복지시설 및 사업 추진현황

### 1.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대전광역시에서 지적장애인을 포함하여 장애인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은 <표 2-3>과 같이 생활시설 14개소, 지역사회재활시설 52개소, 직업재활시설 10개소 등 총 77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표 2-3>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동 구	중 구	서 구	유성구	대덕구	
<b>총 계</b>	<b>77개소</b>	<b>10</b>	<b>16</b>	<b>20</b>	<b>14</b>	<b>17</b>	
생활시설	14	1	1	8	1	3	
지역 사회 재활 시설	<b>계</b>	<b>52</b>	<b>9</b>	<b>14</b>	<b>8</b>	<b>11</b>	
	복지관	5	1	1		2	1
	체육시설	3	-	-	1	1	1
	의료재활	2	-	-	-	2	-
	주간보호	17	2	4	4	3	4
	단기보호	4	-	1		1	2
	공동생활가정	18	5	7	2	1	3
	심부름센터	1	-	1	-	-	-
수화통역센터	2	1	-	1	-	-	
직업재활시설	10	-	1	4	2	3	
장애인생산물 판매시설	1	-	-	-	1	-	

자료 : 대전광역시(2009), 내부자료.

## 1)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생활시설은 장애유형이 같거나 또는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입소하게 하여 장애유형에 적합한 의료, 교육, 직업, 심리, 사회 등 재활서비스와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대전광역시에는 <표 2-4>와 같이 성인지적장애인지설 ‘사랑의 집’을 포함하여 장애인 생활시설 14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2008년 12월말 현재 928명 정원에 781명의 장애인이 이곳에서 생활하며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표 2-4〉 대전광역시 장애인 생활시설 현황

(단위: m<sup>2</sup>, 명)

시 설 명	소 재 지 (설치일)	운영법인	시설규모(m <sup>2</sup> )		생활자		종사 자수	입소대상
			부지	건물	정원	현원		
14개소					982	781	380	
사랑의집 (623-4297)	동구 자양동 61-12 (05. 7.29)	(재단)프란체스코전교봉사수녀회	520.7	494.15	19	17	6	성인지적 장애인
우리사랑 (285-0002)	중구 어남동 59-1 (08.12.19)	(사복)선아복지재단	2,350	923.75	40	4	13	중 중 장애인
한마음의집 (585-0781)	서구 장안동 513-1 (89.12.20)	(사복)한마음	5,432	1,639	70	70	35	시 각 장애인
한 몸 (583-4472)	서구 장안동 513-1 (92.10.14)	(사복)한마음	2,715	1,126	60	60	31	중 중 장애인
한뜻마을 (585-3342)	서구 장안동 513-1 (95. 9.28)	(사복)한마음	3,455	781	37	37	20	지 적 장애인
동 심 원 (581-2220)	서구 오동 277-3 (02. 2. 1)	(사복)연광복지재단	10,590	1771.4	80	70	33	성인지적 장애인
한 걸 음 (585-0780)	서구 장안동 291-2 (06. 7. 5)	(사복)한마음	2,100	991.01	53	31	11	장 애 영유아
삼 보 실 (583-4832)	서구 장안동 508-2 (06. 7.25)	(개인)	3,300	133	13	10	2	지 적 장애인
행복마을 (586-4661)	서구 원정동 61-12 (06. 9.18)	(사복)행복원	2,310	1,032	53	36	18	지 적 장애인
연 광 원 (581-0083)	서구 오동 277-5 (07. 4.19)	(사복)연광복지재단	10,590	983.41	50	21	11	중 중 장애인
성세재활원 (540-3200)	유성구 용계동 319-1 (63. 9.23)	(사복)성재원	7,261	2,860.4	120	90	45	지 체 장애인
정 화 원 (620-8800)	대덕구 대화동 39-1 (63. 9.16)	(사복)천성원	4,561	888.48	58	48	29	정신,청각 안 장애인
온달의집 (620-8900)	대덕구 대화동 39-1 (72. 2. 3)	(사복)천성원	3,500	3,318.3 4	252	215	86	지 적 장애인
평강의집 (620-8700)	대덕구 대화동 39-1 (95. 9. 6)	(사복)천성원	833	1671.42	77	72	40	중 중 장애아동

자료 : 대전광역시(2009), 내부자료.

## 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서비스(보호고용,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장애인생산품 판매 등)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대전광역시에는 2008년 12월말 현재 보호작업시설인 ‘밀알작업장’을 포함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11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표 2-5〉 참조).

〈표 2-5〉 대전광역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현황

(단위: m<sup>2</sup>, 명)

시설명	소재지	장애 유형	시설규모 (m <sup>2</sup> )	근로자수		직원 수	주요내용	비고
				정원	현원			
11개 시설				393	324	49		
밀알작업장 (221-0813)	중구 증촌동 396-11	지적장애	143	50	38	4	휴대용 가스렌즈부품조립	보호작업시설
월평장애인 보호작업장 (472-1762)	서구 월평동 218 주공3단지내	지체	102.5	18	12	3	옷카바	〃
한터 (586-3341)	서구 장안동 513-1	지적장애	792	51	40	6	제빵, 참기름, 들기름	작업활동시설
도토리작업 활동센터 (535-4240)	서구 가장동 53-45	지적장애	91.27	23	18	3	수공예품(카드)	〃
보람의 집 (532-4145)	서구 내동 26-13	지체, 지적장애	446	30	18	3	오토바이보호대 장바구니가방	〃
시온의 집 (543-2105)	유성구 용계동 319-2	지체, 지적장애	151.3	30	29	3	조화, 임가공 핸드폰줄 등	〃
성세재활자립원 (540-3300)	유성구 용계동 319-2	지체, 지적장애	2645.8	50	31	11	전자부품조립, 가방, 임가공	근로작업시설
천성보호작업장 (620-8940)	대덕구 대화동 39-1	지적장애	752.94	95	93	4	단순포장, 화장품임가공	보호작업시설
대전장애인 보호작업장 (637-8044)	대덕구 비래동 116-7	지적장애	815.98	35	35	4	천연비누, 하청임가공	〃
느루작업장 (637-2257)	대덕구 오정동 74-4	지적장애	103	11	10	2	홍삼쿠키	〃
대전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826-3233)	유성구 노은동 561-9(102호)		109.38			6	장애인 생산품 판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자료 : 대전광역시(2009), 내부자료.

### 3)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1)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사업 등을 수행하는 시설이다. 대전광역시에는 2009년 6월말 현재 밀알복지관, 시립산성종합복지관 등 장애인복지관 5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표 2-6〉 참조).

〈표 2-6〉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관 현황

(단위: m<sup>2</sup>, 명)

시 설 명	소재지	시설규모(m <sup>2</sup> )	직원	주요내용
장애인복지관	5개소		148명	
밀알복지관 (627-0900)	삼성동 280-3	부지 432.4 건물 1,669.2	29	의료, 직업, 교육, 심리, 재활
시립산성 종합복지관 (586-8033)	산성동 120-18	부지 3,637.1 건물 2,890.37	31	사회교육사업, 계몽 홍보사업 등
시립장애인 종합복지관 (543-5111)	용계동 319-1	부지 3,305.8 건물 2,409	31	의료, 직업, 교육, 심리, 재활
유성장래인 종합복지관 (822-3637)	죽동 600	부지 2,975 건물1,993	32	사회교육사업, 계몽, 홍보사업 등
대덕구장애인 종합복지관 (637-8848)	연축동 307-4	부지 2,576 건물2,175.5	25	의료, 직업, 교육, 심리, 재활

자료 : 대전광역시(2009), 내부자료.

#### (2)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2009년 6월 현재 대전지역에는 성세병원과 성화대전요양병원 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표 2-7〉 참조).

**<표 2-7> 대전광역시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현황**

(단위: m<sup>2</sup>, 명)

시 설 명	소재지	규모(m <sup>2</sup> ) (설치일)	직원	주요내용	비 고
의료시설	2개소		10명		
성세병원 (824-3110)	유성구 봉명동 629-5,6	부지 658.8 건물 2561.2	30	장애인 진단, 치료 등	(사복)성재원
성화대전요양병원 (717-7610)	유성구 봉명동 678-3	부지 944.4 건물 5,502.2	76	장애인 진단, 치료 등	(사복)성화원

자료 : 대전광역시(2009), 내부자료 재구성.

한편,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및 대통령 공약사항에 의해 대전 권역별 재활병원이 대전 중구 문화동 33번지의 충남대학교병원 부지에 건립된다. 규모는 <표 2-8>과 같이 부지 1,500m<sup>2</sup>, 연면적 10,300m<sup>2</sup>의 지하2층, 지상 6층 규모에 150병상을 갖추게 된다.

**<표 2-8> 대전 권역별 재활병원 공간 배치 계획**

층 별	면적(m <sup>2</sup> )	공간 배치 계획
지하2층	1,500	주차장
지하1층	1,500	주차장, 부대시설,
지상1층	1,300	외래, 특수클리닉, 장애인 종합검진센터, X-ray촬영실, 검사실, 주사실 및 종합처치실, 약국, 매점, 휴게실
지상2층	1,200	재활치료실(물리, 작업, 운동, 수치료, 언어, 소아치료 등), 낮병동 교육재활실, 심리재활실, 케어서비스실.
지상3층	1,200	수중치료실(수중보행풀), 검사실(전기진단검사실, 운동분석실, 요류역동학검사실, 심리평가실, 연하기능검사실, 평형기능 검사실 등), 연구시설, 사회재활실, 직업재활실, CBR실, 교육/홍보/행정지원부서, 세미나 및 회의실
지상4층	1,200	병동, 치료실
지상5층	1,200	병동, 치료실
지상6층	1,200	병동, 치료실
합 계	10,300	



자료 : 대전광역시(2009), 내부자료.

대전 권역별 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사업비는 총 320억원으로 국비 135억원을 포함한 270억원을 지원하고 대학병원에서 50억원을 투입하여 건립하게 된다. 사업 기간은 2009년 11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건축공사를 실시하여 2011년 상반기 개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애인들의 종합적인 상담 및 진단서비스를 전담하게 될 대전 권역별 재활병원은 재활의료 서비스 공급기반 구축과 매년 늘어나는 장애인들의 의료복지 서비스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대전에 권역별 재활병원이 개원하면 대전의 6만여명의 장애인 및 충청권 장애인 약 23만명이 서울 등 원거리까지 내원하는 불편을 없애고 이곳에서 각종 첨단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3)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생활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받으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 운영되고 있다. 대전지역에는 2008년 12월말 현재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 18개소이며, 이곳에서 80명의 장애인이 사회재활교사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sup>2)</sup>.

### (4)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휴식·요양·자립준비를 위한 거주 공간 및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가족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협력하는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대전지역에는 2006년부터 설치하기 시작하여 2008년 12월말 현재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곳에서 42명(정원 52명)의 장애인이 단기간 동안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표 2-9〉 참조).

2) 대전광역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현황은 【부록 1】을 참조할 것.

**<표 2-9> 대전광역시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현황**

(단위: m<sup>2</sup>, 명)

시 설 명	소재지	규모(m <sup>2</sup> )	이용자		직원	주요내용
			정원	현원		
단기보호시설	4개소		52	42	12	
밀알단기보호센터(226-0813)	중구 용두동122-9	98.73	15	10	3	장애아단기보호
푸른초장 단기보호센터(862-3692)	유성구 신성동209-6	124.6	10	10	3	장애아단기보호
대덕특수교육원(623-8071)	대덕구 비래동115-30	118.56	12	12	3	장애아단기보호
포도나무 단기보호센터(622-0675)	대덕구 오정동 658-9	71.72	15	10	3	장애아단기보호

자료 : 대전광역시(2009), 내부자료.

### (5)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낮 동안 보호하여 장애인 가족의 항시 보호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가족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대전지역에는 2008년 12월말 현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7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곳에서 약 204명의 장애인이 낮 동안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성인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수요가 높는데 반해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이 많은 편이다<sup>3)</sup>.

## 4) 장애인 특수교육시설

### (1) 장애인 특수학교

장애인 특수학교는 장애아동에게 초·중등과정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가르치고 있다. 대전지역의 2009년 6월 현재 특수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표 2-10>과 같이 지적장애아동 특수학교인 대전혜광학교를 포함하여 4개 특수학교 108개 학급에서 784명의 장애학생이 재학 중이다.

3) 대전광역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현황은 【부록 2】를 참조할 것.

〈표 2-10〉 대전광역시 특수학교 현황

(단위: 명)

학교명	구분	장애 종별	과정별 학급수 / 학생수						교원	소재지	비고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전공	계			
계			7/23	42/231	23/185	25/242	11/103	108/784	198		
대전맹학교	공립	시각	1/3	6/14	3/24	7/57	3/21	20/119	41	동구 가오동 171-1	285-5002
대전혜광학교	공립	지적	1/2	12/75	6/53	6/70	4/43	29/243	51	동구 가오동 171-1	285-0253
대전원명학교	사립	지적 청각 언어	4/14	18/91	11/84	9/82	4/39	46/310	77	대덕구 대화동 39-1	620-8622
대전성세재활학교	사립	지체	1/4	6/51	3/24	3/33	-	13/112	29	유성구 용계동 319-3	540-3400

자료 : 대전광역시(2009), 내부자료.

## (2) 장애인 특수학급

사회통합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 및 일반학교에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급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대전지역에는 2009년 3월말 현재 174개 학교(유치원)에 199개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1,327명의 학생(원생)이 통합교육을 받고 있다(〈표 2-11〉 참조).

〈표 2-11〉 대전광역시 장애인 특수학급 현황

(단위: 명)

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학급	학생	학교	학급	학생	학교	학급	학생	학교	학급	학생	학교	학급	학생
174	199	1,327	14	14	67	99	116	703	40	43	288	21	26	269

자료 : 대전광역시(2009), 내부자료.

## 2. 장애인복지사업 추진 현황

장애인복지사업 중에서 지적장애인복지 관련 비중이 높은 사업으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 의료비 및 교육비 지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여성장애인 가사우미,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장애수당 지급

장애수당 지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단, 보장시설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수당만 지급)에게 지급한다. 여기에서 중증장애인은 장애등급이 1~2급과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지적 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이며, 경증장애인은 장애등급이 3~6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2009년 지원 금액은 기초수급 중증장애인이 1인당 월 130,000원이고, 차상위 중증장애인이 월 120,000원, 기초수급 및 차상위 경증장애인이 월 30,000원이다. 보장시설 장애인 중 기초수급 중증장애인은 월 70,000원, 기초수급 경증장애인은 월 20,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2008년에 12,000명의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97억 800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했으며, 2009년에는 12,682명에게 114억2,700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한다.

## 2) 장애아동수당 지급

장애아동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에게 지급된다. 여기에서 중증장애인은 장애등급이 1~2급과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이며, 경증장애인은 장애등급이 3~6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2009년 지원 금액은 기초수급 중증장애아동에게 1인당 월 200,000원, 차상위 중증장애아동에게 월 150,000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장애아동에게 월 100,000원을 지급한다. 대전광역시는 2008년에 550명에게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했으며, 2009년 623명에게 11억9,400만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지원한다.

## 3) 장애인 의료비, 교육비 지원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에게 병원 진료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장애인 보장구 중에서 의료급여 대상 품목을 구입할 때 상환액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20%)을 전액 지원하고 있는데 2009년 1,945명에게 4억4,9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자녀에게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대전광역시에서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부교재, 학용품비 등 장애인자녀 교육비를 2009년 57명에게 6,500만원을 지원한다.

#### 4) 장애인 무상보육료 지원 및 특수보육시설 운영

취학전 5세이하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의 경우 2009년에 월 387,000원을 600명에게 지원한다. 장애아특수보육시설로 장애아전담보육시설 5개소(113명), 장애아통합보육시설 24개소(1,043명)가 운영되고 있다.

#### 5)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도의 도입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제도가 2007년 4월부터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1급 중증장애인에게 가사지원,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등에 대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2009년 지원 대상자 850명에게 월 30~90시간 서비스(시간당 8,000원)를 제공하고 있다<sup>4)</sup>.

#### 6)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사업 확대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장애인들의 일상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이다. 사업내용은 임신, 출산 및 산후조리를 위한 도우미 파견, 자녀양육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이다. 이용대상은 등록 장애인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저소득 가정의 여성장애인, 가족 등의 지원체계가 없는 중증여성장애인, 임신 및 출산예정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등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는 2009년 10월 현재 대전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을 포함하여 장애인복지관 4개소에서 44명의 가사도우미를 85명의 여성장애인 가정에 파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sup>5)</sup>.

4) 활동보조서비스 수요증대로 대전광역시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 지원하였다. 2009년 기준 275명(1급 223명, 2급52명)×월평균 40시간×12월×8,000원×12월= 739백만원(시비70%, 구비30%)을 지원한다.

5) 2007년까지 2개소에서 2008년부터는 4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 사업비 164,004천원(개소 당 41001천원) 지원되고 있다.

**<표 2-12> 대전광역시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사업 지원 현황**

계	2006 ~ 2007	2008 하반기 부터
4개소	2	2
기관명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밀알복지관( '07부터)	유성구 장애인복지관 대덕구 장애인복지관
사업비	76,032천원	21,000천원

자료 : 대전광역시(2009), 내부자료.

### 7)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지적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고충상담, 도우미 파견 및 지적장애인의 자립 생활능력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지원 등을 수행하는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를 사단법인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의회 및 시도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곳 센터의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담지원사업 : 복지서비스 정보제공, 부모가족상담, 주택 및 직업알선
- 도우미 파견 : 지적장애인의 사회활동지원을 위한 도우미서비스 등
- 권익옹호사업 : 성폭력, 자기권리주장, 인권옹호, 자조집단 운영 등 지적장애인의 권익옹호활동지원
- 교육 및 홍보사업 : 도우미양성, 지도자양성, 장애예방, 부모교육
- 지역자원개발 및 연계 : 후원자 발굴, 자원봉사자 교육, 지역복지서비스 연계
- 문화체육 활동지원사업 : 생활체육, 문화참여활동 등

**<표 2-13> 대전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현황**

시설명칭	주소	시설장	전화	비고
대전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449-8번지 만계빌딩302호	윤용준	632-6454	

## 제4절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평가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증장기발전계획(2009)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지적장애인 가족의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여부, 이용자만족도를 이차자료 분석(secondary data analysis)으로 살펴보았다.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장애인수당지급이 84.3%로 가장 높고, 장애인복지관이 74.5%, 시내버스 저상버스 운행이 68.6%, 재활병의원이 56.9%, 장애인편의시설과 장애인 의료비 지급이 54.9%, 장애인의무고용제도와 장애인체육시설이 51.0%, 여성도우미 파견사업이 49.0% 등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사업의 이용률은 장애수당 지급이 72.5%로 가장 높고, 장애인복지관이 45.1%, 시내버스 저상버스 운행이 41.2%, 장애인 의료비 지급이 35.3%, 재활병의원이 31.4%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이용자만족도를 리커트 5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장애인 자녀 교육비지원이 4.08점으로 가장 높았고, 장애인보호작업장이 3.70점, 장애수당지급이 3.50점, 성인장애인 야간학교가 3.40점, 장애인복지관이 3.33점, 여성장애인도우미 파견사업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3.00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14〉 참조).

**<표 2-14> 지적장애인의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인지도·이용율·만족도**  
(단위: 명, %)

사 업 명	인지도		이용여부		이용자만족도 (점수)
	안다	모른다	있다	없다	
장애수당 지급	43(84.3)	8(15.7)	37(72.5)	14(27.5)	3.50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12(23.5)	39(76.5)	9(17.6)	42(82.4)	2.33
장애인 의료비 지급	28(54.9)	23(45.1)	18(35.3)	33(64.7)	2.53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18(35.3)	33(64.7)	12(23.5)	39(76.5)	4.08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21(41.2)	30(58.8)	3(5.9)	48(94.1)	2.57
활동보조인 서비스	20(39.2)	31(60.8)	4(7.8)	47(92.2)	3.00
성인장애인 야간학교	14(27.5)	37(72.5)	1(2.0)	50(98.0)	3.40
장애인보호(근로) 작업장	13(25.5)	38(74.5)	1(2.0)	50(98.0)	3.70
장애인복지관	38(74.5)	13(25.5)	23(45.1)	28(54.9)	3.33
장애인 편의시설	28(54.9)	23(45.1)	13(25.5)	38(74.5)	2.66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26(51.0)	25(49.0)	5(9.8)	46(90.2)	2.22
여성장애인 도우미 파견사업	25(49.0)	26(51.0)	4(7.8)	47(92.2)	3.00
장애인가족지원센터(부모회)	13(25.5)	38(74.5)	4(7.8)	47(92.2)	3.00
시내버스 저상버스 운행	35(68.6)	16(31.4)	21(41.2)	30(58.8)	2.60
장애인복지지도 제작 보급	5(9.8)	46(90.2)	-	51(100.0)	-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터	16(31.4)	35(68.6)	9(17.6)	42(82.4)	2.66
재활병의원	29(56.9)	22(43.1)	16(31.4)	35(68.6)	3.50
장애인체육시설	26(51.0)	25(49.0)	10(19.6)	41(80.4)	2.40

주) 이용자만족도는 매우 만족 5점, 대체로 만족 4점, 보통 3점, 약간 불만족 2점, 매우 불만족 1점으로 환산한 평균점수임.



## 제 3 장

---

### 연구설계

.....

제1절 조사대상자 표집 및 자료수집

제2절 조사내용

제3절 자료분석

.....



## 제3장 연구설계

### 제1절 조사대상자 표집 및 자료수집

#### 1. 지적장애인 가족 설문조사

지적장애인가족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는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지적장애학생 180명, 장애인보호작업장에 근무하는 지적장애인 88명,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 지적장애인 70명 등 총 338명을 조사대상자로 표집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200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 동안 실시되었다. 조사방법은 본 연구 자문위원인 특수학교 교감 2명, 보호작업장 원장 3명, 장애인종합복지관 부장 1명과 직업재활팀장 1명 등 총 7명이 설문조사를 도와주었다. 시설(학교)을 이용하는 지적장애인이 귀가할 때 설문지와 답례품을 가정으로 보내서 부모 등 가족이 응답하여 출근(등교)할 때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표 3-1〉 지적장애인 시설별 표본 추출 및 조사 장애인 수

(단위 : 명, %)

구 분	소속 기관	표본수	조사완료	조사율
특수학교	대전혜광학교	100	100	100.0
	대전원명학교	80	73	91.3
보호작업장	대전장애인보호작업장	23	22	95.6
	천성원보호작업장	20	17	85.0
	밀알보호작업장	35	35	100.0
	도토리보호작업장	10	6	60.0
장애인복지관	대전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35	33	94.3
	유성장래인종합복지관	35	31	88.6
계		338	317	93.8

전체 표본 338명 중에서 조사 완료된 인원은 317명으로 회수율이 93.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특수학교 교감과 보호작업장 원장 및 장애인복지관 실무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서 가능했다. 조사대상 시설(학교)과 조사대상 지적장애인 인원은 <표 3-1>과 같다.

## 2. 전문가 의견조사

설문조사 대상 학교 및 시설의 실무자를 중심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즉 다음과 같이 간담회를 통해 지적장애인 현안문제와 대안을 모색하는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 1) 자문회의 목적

- 지적장애인의 현안문제와 대안모색, 설문지 구성 및 조사 방법에 관한 토론 등

### 2) 일시

- 2009. 10. 15(목) 14:00~16:00

### 3) 참석자

- 김근중(대전혜광학교 교감)
- 유지윤(대전원명학교 교감)
- 장인국(대전장애인보호작업장 원장)
- 여광조(밀알작업장 원장)
- 권용명(대전광역시장애인부모회 부설 도토리작업장 원장)
- 김아영(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부장)
- 이채은(유성장래인종합복지관 직업재활팀장)

## 제2절 조사내용

지적장애인의 복지증진대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이용하여 지적장애인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측정도구는 오혜경 외(2007), 김선경(2002), 송선권(2004)의 연구를 참조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본 조사는 대전지역 지적장애인들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조사하기 위해 지적장애인의 일반적인 특성, 가족의 특성, 자녀보호, 미래계획, 복지욕구 우선순위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주요 조사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 3-2>와 같이 조사영역을 크게 5개 분야로 분류하였다.

첫째, 일반적인 특성으로 연령, 성별, 장애등급, 중복장애 여부, 동거가족 형태 등을 살펴보았다.

둘째, 가족의 특성으로 일상생활동작능력, 주관적 생활수준, 장애자녀 교육 및 양육 추가비용, 부양부담이 되는 비용 등을 조사했다.

셋째, 지적장애 자녀의 보호와 관련된 사항은 주부양자, 주부양자의 건강상태, 부양하면서 겪는 어려움의 종류, 위치확인시스템의 필요성, 차별경험 여부 등을 조사했다.

넷째, 지적장애 자녀의 미래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 미래와 관련된 준비, 장래계획에서 가장 염려되는 내용, 부모 사후 자녀 주거형태, 성년후견인제도 등을 조사했다.

다섯째, 복지욕구로서 가족지원서비스, 대전광역시 지적장애인복지사업 우선순위 등을 조사하였다.

**<표 3-2> 지적장애인 가족 설문조사 영역 및 항목**

조사 영역	조사 항목
일반적인 특성	연령, 성별, 장애등급, 중복장애 여부, 동거가족 형태
가족의 특성	일상생활동작능력 등, 주관적인 생활수준, 장애자녀 교육 및 양육 추가비용, 부양부담이 되는 비용 등
자녀보호	주부양자, 주부양자의 건강상태, 부양하면서 겪는 어려움의 종류, 위치확인시스템의 필요성, 차별경험 여부 등
미래계획	미래와 관련된 준비, 장래계획에서 가장 염려되는 내용, 부모 사후 자녀 주거형태, 성년후견인제도 등
복지욕구	가족지원서비스, 대전광역시 지적장애인복지사업 우선순위 등

### 제3절 자료분석

본 조사의 표본수는 338명이었으며, 실제 조사결과로 얻어진 총 사례수는 317명으로 응답율은 93.8%이었다. 이 중에서 응답내용이 부실한 2부를 제외하고 총 315부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자료에 대한 통계처리는 코딩작업 후 수정을 거쳐 사회과학을 위한 통계프로그램인 SPSSW IN 1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는 분석 목적에 따라 단순 빈도 분석과 교차분석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문항분석에 있어서는 관련성이 없는 ‘비응답’ 과 ‘무응답’ 의 경우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승수 적용과 반올림 관계로 백분율의 합계가 100.0을 약간 넘거나 모자라는 경우에도 계에서는 비율을 100.0으로 제시하였다.

## 제 4 장

---

### 조사결과 분석

.....  
제1절 조사대상자 표집 및 자료수집

제2절 조사내용

제3절 자료분석  
.....





## 제4장 조사결과 분석

## 제1절 지적장애인 가족의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 1. 일반적인 특성

〈표 4-1〉 일반적인 특성

(단위 : 명, %)

구 분	하위영역	내 용	사 례 수	비 율
일반적 특성	성 별	남 자	213	67.6
		여 자	102	32.4
		계	315	100.0
	생애주기별	아동청소년기(20세 미만)	178	56.5
		성인기 이후(20세 이상)	137	43.5
		계	315	100.0
	장애등급	지적장애 1급	152	48.3
		지적장애 2급	122	38.7
		지적장애 3급	41	13.0
		계	315	100.0
	중복장애	중복장애 있다	123	39.0
		중복장애 없다	192	61.0
		계	315	100.0
	복지시설	특수학교 재학	171	54.3
		보호작업장 근무	80	25.4
		장애인복지관 이용	64	20.3
계		315	100.0	

조사대상 지적장애인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성별, 생애주기별, 장애등급, 중복장애

유무, 이용하고 있는 복지시설을 살펴본 결과 <표 4-1>과 같다.

먼저 성별 분포도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자는 ‘남자’가 67.6%(213명)이고 ‘여자’가 32.4%(102명)로 남자가 여자보다 약 35% 정도 많게 나타났다.

생애주기별로 살펴보면 20세 미만 ‘아동청소년기’가 56.5%(178명), 20세 이상 ‘성인기이후’가 43.5%(137명)를 보였으며, 노년기 지적장애인은 사례수가 너무 적어 성인기 이후에 포함하여 구분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장애등급은 ‘1급’이 48.3%(152명), 2급이 38.7%(122명), 3급이 13.0%(41명)이다. 중복장애 여부에 있어서는 ‘중복장애가 없다’는 응답자가 61.0%(192명)이며 ‘중복장애가 있다’는 경우가 39.0%(123명)로 나타났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학교 및 복지시설을 살펴보면 ‘특수학교 재학 중’인 경우가 54.3%(171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보호작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25.4%(80명), 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20.3%(64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 2. 장애정도 및 가족의 특성

### 1) 일상생활 동작능력

조사대상 지적장애인의 일상생활 동작능력(개인위생, 목욕하기, 식사하기, 화장실 사용, 옷 벗고 입기 등)을 살펴본 결과 <표 4-2>와 같이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와 ‘대부분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32.4%(102명)로 가장 높고,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다’가 22.5%(71명), ‘혼자서 할 수 있다’가 12.7%(40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등급별로 살펴보면, 장애 1급의 경우에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3.6%(51)로 가장 높고, ‘대부분 도움이 필요하다’가 28.3%(43명), ‘혼자서 할 수 있다’가 23.0%(35명),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가 15.1%(23명)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장애 2급의 경우에는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가 45.1%(55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부분 도움이 필요하다'가 38.5%(47명),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다'가 13.1%(16명), '혼자서 할 수 있다'가 3.3%(4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 3급의 경우에는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가 58.5%(24명)로 가장 높고, '대부분 도움이 필요하다'가 29.3%(12명),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다'가 9.8%(4명), '혼자서 할 수 있다'가 2.4%(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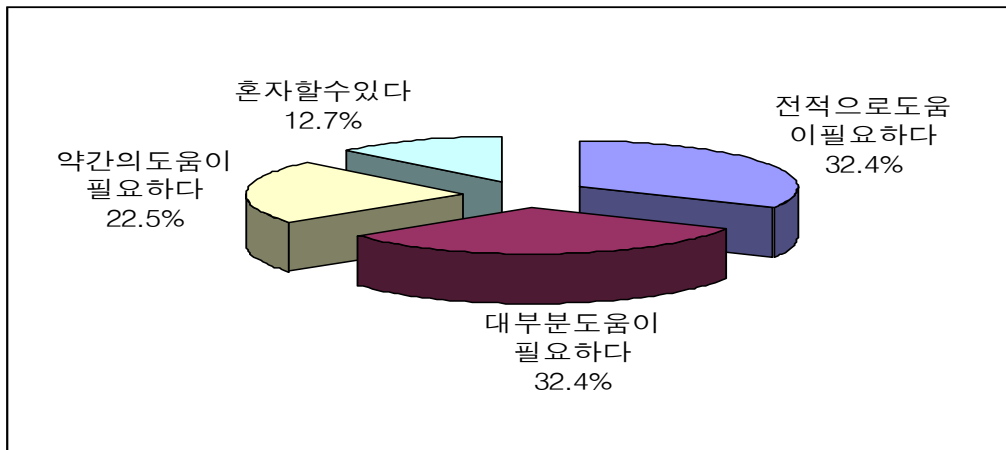
조사대상자의 일상생활 동작능력을 리커트 4점 척도로 환산하여 살펴본 결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1급이 2.6점으로 타인 의존도가 가장 높고, 장애 2급은 1.75점, 3급은 1.58점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4-2〉 일상생활 동작능력

(단위 : %(명))

구 분	전체	장애등급별		
		1급	2급	3급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	32.4 (102)	15.1 (23)	45.1 (55)	58.5 (24)
대부분 도움이 필요하다	32.4 (102)	28.3 (43)	38.5 (47)	29.3 (12)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다	22.5 (71)	33.6 (51)	13.1 (16)	9.8 (4)
혼자서 할 수 있다	12.7 (40)	23.0 (35)	3.3 (4)	2.4 (1)
계	100.0 (315명)	100.0 (152)	100.0 (122)	100.0 (41)
평균 점수	2.16	2.64	1.75	1.56

\* 평균 점수는 ①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 4점, ② 대부분 도움이 필요하다= 3점, ③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다= 2점, ④ 혼자서 할 수 있다= 1점으로 환산한 점수임.



[그림 4-1] 일상생활 동작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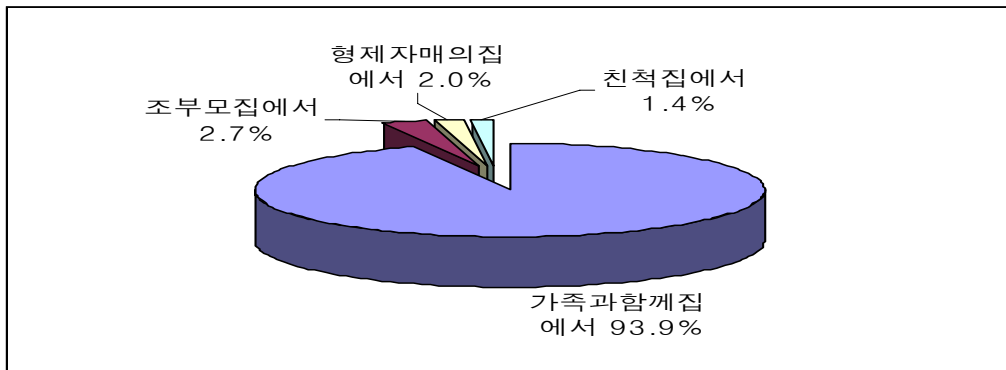
## 2) 현재 거주형태

조사대상 지적장애인의 현재 거주형태를 살펴본 결과 <표 4-3>과 같이 ‘가족과 함께 집에서’ 생활한다는 응답자가 93.9%(275명)로 가장 높았고, ‘조부모집에서’가 2.7%(28명), ‘형제자매의 집에서’가 2.0%(6명), 친척집에서가 1.4%(4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3> 거주형태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비율
가족과 함께 집에서	275	93.9
조부모집에서	8	2.7
형제자매의 집에서	6	2.0
친척집에서	4	1.4
계	293	100.0



[그림 4-2] 거주형태

### 3) 주관적 생활수준

조사대상 지적장애인 가족의 주관적 생활수준을 살펴본 결과 <표 4-4>와 같이 ‘보통’ 이라는 응답자가 60.0%(189명)로 가장 많았고, ‘못사는 편이다’ 가 26.0%(82명), ‘매우 못사는 편이다’ 가 7.0%(22명), ‘잘사는 편이다’ 가 5.7%(18명), ‘매우 잘사는 편이다’ 가 1.3%(4명)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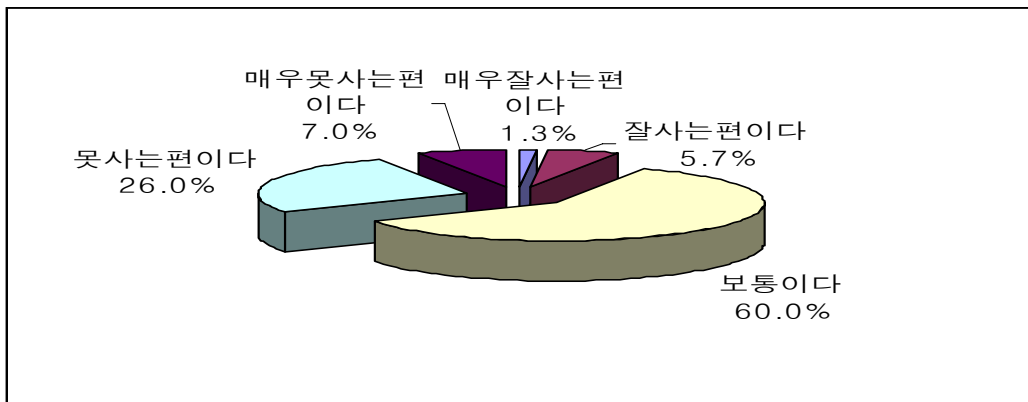
<표 4-4> 주관적 생활수준

(단위 : %(명))

구 분	전체	생애주기별	
		아동청소년기	성인기 이후
매우 잘사는 편이다	1.3 (4)	0.6 (1)	0.3 (3)
잘사는 편이다	5.7 (18)	5.1 (9)	2.9 (9)
보통이다	60.0 (189)	62.9 (112)	35.6 (77)
못사는 편이다	26.0 (82)	25.3 (45)	14.3 (37)
매우 못사는 편이다	7.0 (22)	6.2 (11)	3.5 (11)
계	100.0 (315)	100.0 (178)	100.0 (137)

전체적으로 ‘못산다’ 는 응답자가 33.0%(110명)이며, ‘잘산다’ 는 응답자는 7%(22명)나타났다. 즉, 지적장애인 가족은 대체적으로 주관적 생활수준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다.

주관적 생활수준을 생애주기별로 살펴본 결과 아동청소년기는 ‘보통’ 이라는 응답자가 62.9%(112명)로 가장 많았고, ‘못사는 편이다’ 가 25.3%(45명), ‘매우 못사는 편이다’ 가 6.2%(11명), ‘잘사는 편이다’ 가 5.1%(9명), ‘매우 잘사는 편이다’ 가 0.6%(1명)으로 나타났으며, 성인기 이후는 ‘보통’ 이라는 응답자가 35.6%(77명)로 가장 많았고, ‘못사는 편이다’ 가 14.3%(37명), ‘매우 못사는 편이다’ 가 3.5%(11명), ‘잘사는 편이다’ 가 2.9%(9명), ‘매우 잘사는 편이다’ 가 0.3%(3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못산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성인기 이후(17.8%)보다 아동청소년기(31.5%)에서 더 높았다.



[그림 4-3] 주관적 생활수준

#### 4) 추가되는 교육 및 양육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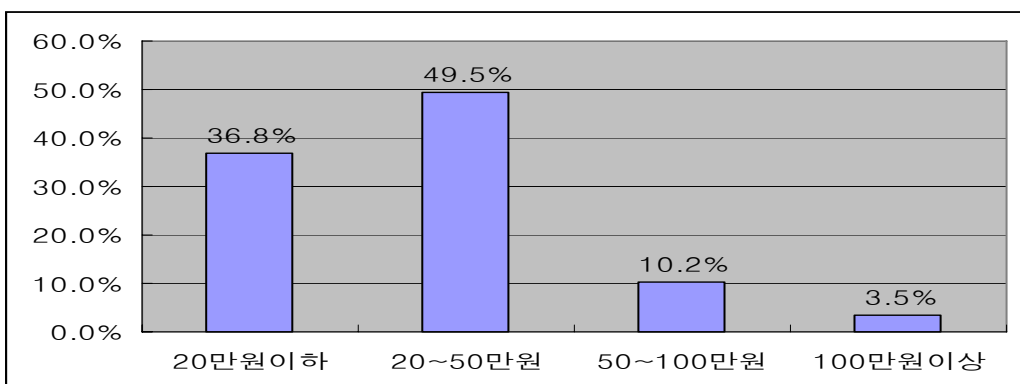
다른 비장애 자녀에 비해 지적장애 자녀의 교육과 양육을 위하여 매월 추가되는 비용에 대한 질문에서 조사대상 지적장애인의 49.5%(156명)가 20~50만원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20만원 이하가 36.8%(116명), 50~100만원이 10.2%(32명), 100만원 이상이 3.5%(1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등급별로 살펴보면, 장애 1급의 경우에는 50.0%(76명)가 20~5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만원 이하가 37.5%(57명), 50~100만원이 10.5%(16명), 100만원 이상이 2.0%(3명)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장애 2급의 경우에는 52.5%(64명)가 20~5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만원 이하가 32.0%(39명), 50~100만원이 11.5%(14명), 100만원 이상이 4.1%(5명)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장애 3급의 경우에는 20만원 이하가 48.8%(20명)로 가장 많았으며, 20~50만원이 39.0%(15명), 50~100만원이 4.9%(2명), 100만원 이상이 7.3%(3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5> 추가 교육 및 양육비용**

(단위 : %(명))

구 분	전체	장애등급		
		1급	2급	3급
20만원 이하	36.8 (116)	37.4 (57)	32.0 (39)	48.8 (20)
20~50만원	49.5 (156)	50.0 (76)	52.5 (64)	39.0 (16)
50~100만원	10.2 (32)	10.5 (16)	11.5 (14)	4.9 (2)
100만원 이상	3.5 (11)	2.0 (3)	4.1 (5)	7.3 (3)
계	100.0 (315)	100.0 (152)	100.0 (122)	100.0 (41)



**[그림 4-4] 추가 교육 및 양육비용**

### 5) 가장 부담이 많이 되는 비용

지적장애 자녀를 돌보면서 가장 부담이 되는 비용이 무엇인가를 다중응답으로 질문한 결과 <표 4-6>과 같이 ‘장래에 발생할 비용’이 54.9%(173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치료비’가 41.3%(130명), ‘교육비’가 33.0%(104명), ‘기타(복지시설 이용료 등)’이 28.9%(91명)로 나타났으며, ‘보호 및 간호비’가 24.0%(76명), ‘교통비’가 9.5%(30명), ‘상담 및 진단비’가 4.8%(15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6> 생애주기별 가장 부담이 되는 비용**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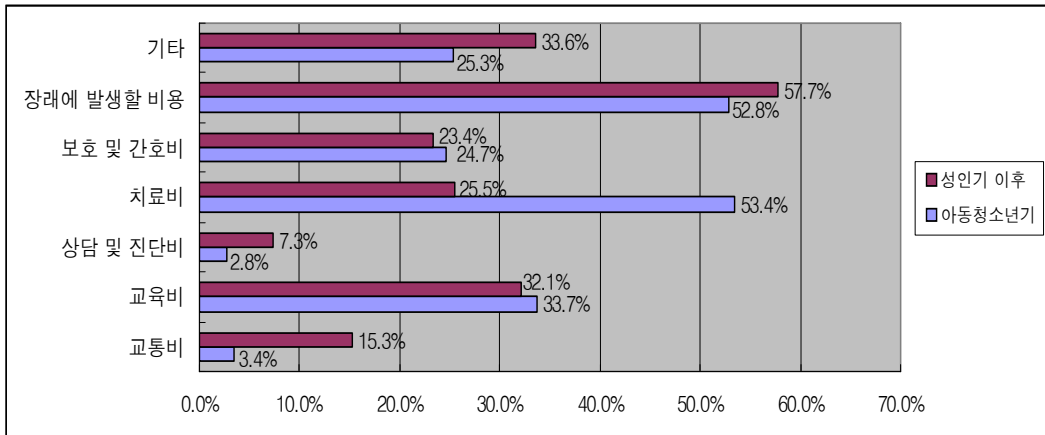
구 분	전체	생애주기별	
		아동청소년기	성인기 이후
교통비	9.5 (30)	3.4 (9)	15.3 (21)
교육비(학습지원, 예체능 등)	33.0 (104)	33.7 (60)	32.1 (44)
상담 및 진단비	4.8 (15)	2.8 (5)	7.3 (10)
치료비(언어, 물리, 작업치료등)	41.3 (130)	53.4 (95)	25.5 (35)
보호 및 간호비	24.0 (76)	24.7 (44)	23.4 (32)
장래에 발생할 비용	54.9 (173)	52.8 (94)	57.7 (79)
기 타(복지시설 이용료 등)	28.9 (91)	25.3 (45)	33.6 (46)
계	100.0 (315)	100.0 (178)	100.0 (137)

주) 다중응답의 결과임.

생애주기별로 가장 부담이 되는 비용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기의 경우에는 ‘치료비’라는 응답이 53.4%(95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장래에 발생할 비용’이 52.8%(94명), ‘교육비’가 33.7%(60명), ‘기타’가 25.3%(45명), ‘보호 및 간호비’가 24.7%(44명), ‘교통비’가 3.4%(9명), ‘상담 및 진단비’가 2.8%(5명)의 순으로 나



타났다. 성인기 이후의 경우에는 ‘장래에 발생할 비용’이 57.7%(79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가 33.6%(46명), ‘교육비’가 32.1%(44명), ‘치료비’가 25.5%(35명), ‘보호 및 간호비’가 23.4%, ‘교통비’가 15.3%(21명), ‘상담 및 진단비’가 7.3%(10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5] 생애주기별 가장 부담이 되는 비용

장애등급별로 가장 부담이 되는 비용을 살펴본 결과 <표 4-7>과 같이, 장애 1급의 경우에는 ‘장래에 발생할 비용’이 56.6%(86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치료비’가 40.8%(62명), ‘보호 및 간호비’가 30.3%(46명), ‘교육비’가 29.6%(45명), ‘기타’가 27.6%(41명), ‘교통비’가 8.6%(13명), ‘상담 및 진단비’가 4.6%(7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 2급의 경우에는 ‘장래에 발생할 비용’이 26.7%(64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치료비’가 23.3%(56명), ‘교육비’가 18.3%(44명), ‘기타’가 13.3%(32명), ‘보호 및 간호비’가 11.3%(27명), ‘교통비’가 4.6%(11명), ‘상담 및 진단비’가 2.5%(6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 3급의 경우에는 ‘장래에 발생할 비용’이 56.1%(23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가 43.9%(18명), ‘교육비’가 36.6%(15명), ‘치료비’가 29.3%(12명), ‘교통비’가 14.6%(6명), ‘보호 및 간호비’가 7.3%(3명), ‘상담 및 진단비’가 4.9%(2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7〉 장애등급별 가장 부담이 되는 비용

(단위 : %(명))

구 분	전체	장애등급별		
		1급	2급	3급
교통비	9.5 (30)	8.6 (13)	4.6 (11)	14.6 (6)
교육비(학습지원, 예체능 등)	33.0 (104)	29.6 (45)	18.3 (44)	36.6 (15)
상담 및 진단비	4.8 (15)	4.6 (7)	2.5 (6)	4.9 (2)
치료비(언어, 물리, 작업치료 등)	41.3 (130)	40.8 (62)	23.3 (56)	29.3 (12)
보호 및 간호비	24.0 (76)	30.3 (46)	11.3 (27)	7.3 (3)
장래에 발생할 비용	54.9 (173)	56.6 (86)	26.7 (64)	56.1 (23)
기타	28.9 (91)	27.6 (41)	13.3 (32)	43.9 (18)
계	100.0 (315)	100.0 (300)	100.0 (240)	100.0 (77)

### 3. 장애자녀의 보호

#### 1) 주보호자

지적장애 자녀를 가장 많이 돌보는 주보호자를 묻는 질문에서 <표 4-8>과 같이 ‘어머니’ 84.1%(265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조부모’가 4.8%(15명), ‘아버지’가 3.2%(10명), ‘도우미(유급고용인)’가 3.2%(10명), 형제·자매가 2.3%(7명), ‘친척’이 1.0%(3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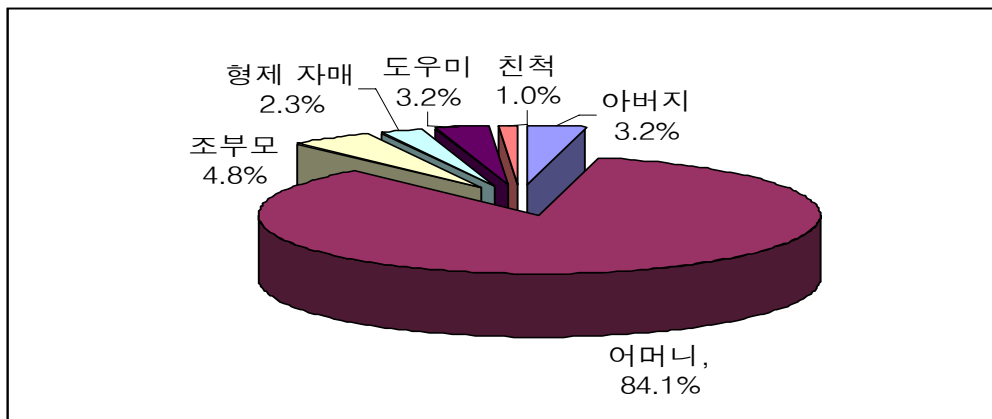
생애주기별로 살펴보면, 아동청소년기의 경우에는 ‘어머니’ 88.1%(155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조부모’가 6.3%(11명), ‘아버지’가 2.3%(4명), ‘형제·자매’, ‘도우미(유급고용인)’, ‘친척’이 각각 1.1%(2명)로 나타났다. 성인기 이후의 경우에도 ‘어머니’가 82.1%(110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아버지’가 4.5%(6명), ‘도우미(유급고용인)’가 6.0%(8명), ‘형제·자매’가 3.7%(5명), ‘조부모’가 3.0%(4명),

‘친척’ 이 0.7%(1명)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4-8〉 후보호자

(단위 : %(명))

구 분	전체	생애주기별	
		아동청소년기	성인기이후
아버지	3.2 (10)	2.3 (4)	4.5 (6)
어머니	84.1 (265)	88.1 (155)	82.1 (110)
조부모	4.8 (15)	6.3 (11)	3.0 (4)
형제·자매	2.3 (7)	1.1 (2)	3.7 (5)
도우미(유급고용인)	3.2 (10)	1.1 (2)	6.0 (8)
친척	1.0 (3)	1.1 (2)	0.7 (1)
계	100.0 (310)	100.0 (176)	100.0 (134)



[그림 4-6] 후보호자

## 2) 후보호자의 건강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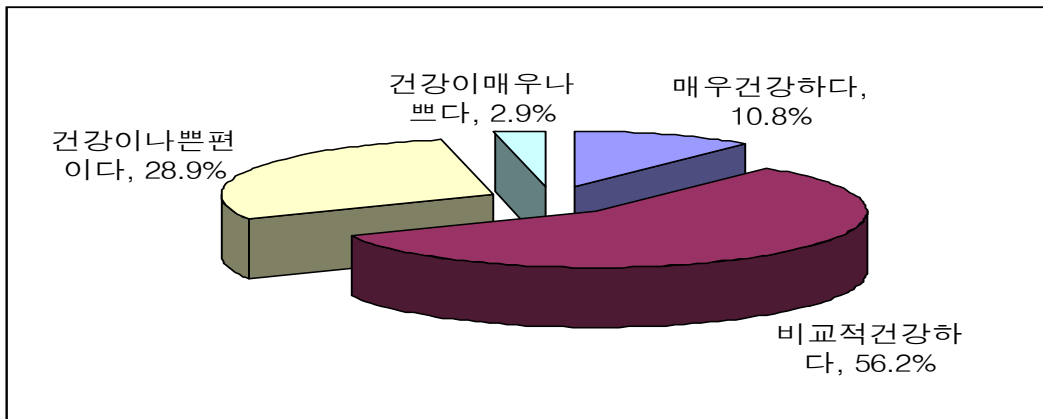
지적장애 자녀를 가장 많이 돌보고 있는 후보호자의 건강상태를 묻는 질문에서 <표 4-9>와 같이 ‘비교적 건강하다’가 56.2%(177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건강이 나쁜 편이다’가 28.9%(91명), ‘매우 건강하다’가 10.8%(34명), ‘건강이 매우 나쁘다’가 2.9%(2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건강이 나쁘다는 응답률이 31.8%이고, 건강이 좋다는 응답률이 67.0%이다.

<표 4-9> 후보호자의 건강상태

(단위 : %(명))

구 분	전체	생애주기별	
		아동청소년기	성인기이후
매우 건강하다	10.8 (34)	7.4 (13)	15.4 (21)
비교적 건강하다	56.2 (177)	64.4 (113)	47.1 (64)
건강이 나쁜 편이다	28.9 (91)	25.7 (45)	33.8 (46)
건강이 매우 나쁘다	2.9 (2)	2.3 (4)	3.7 (5)
계	100.0 (311)	100.0 (175)	100.0 (136)

후보호자의 건강상태를 생애주기별로 살펴보면, 아동청소년기의 경우에는 ‘비교적 건강하다’가 64.4%(113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건강이 나쁜 편이다’가 25.7%(45명), ‘매우 건강하다’가 7.4%(13명), ‘건강이 매우 나쁘다’가 2.3%(4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청소년기의 후보호자는 건강이 나쁘다는 응답률이 28.0%이고, 건강이 좋다는 응답률이 71.8%이다. 성인기 이후의 경우에는 ‘비교적 건강하다’가 47.1%(64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건강이 나쁜 편이다’가 33.8%(46명), ‘매우 건강하다’가 15.4%(21명), ‘건강이 매우 나쁘다’가 3.7%(5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건강이 나쁘다는 응답률이 37.5%, 건강이 좋다는 응답률이 62.5%이다. 아동청소년기와 성인기 이후의 후보호자 건강상태를 비교하면 아동청소년기에 비해 성인기 이후 장애인을 보호하는 후보호자가 연령이 높아 건강상태가 다소 나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4-7] 후보호자 건강상태

### 3) 지적장애 자녀로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어려움

지적장애 자녀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다중응답으로 질문한 결과, <표 4-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활동의 부족’이 69.8%(220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가활동의 부족’이 57.1%(180명), ‘대인관계의 축소’가 54.0%(170명), ‘타인의 인식부족’이 50.8%(160명), ‘사회적 차별’이 42.5%(134명), ‘지지집단의 부족’이 27.6%(87명), ‘기타(경제적 어려움, 공공장소 기피, 시설부족으로 인한 문제, 차량봉사 등)’가 3.5%(1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생애주기별로 살펴보면, 아동청소년기의 경우에는 ‘사회활동의 부족’이 69.1%(123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가활동의 부족’이 61.8%(110명), ‘대인관계의 축소’가 56.2%(100명), ‘타인의 인식부족’이 50.0%(89명), ‘사회적 차별’이 36.0%(64명), ‘지지집단의 부족’이 23.6%(42명), ‘기타’가 2.2%(4명)로 나타났다. 성인기 이후의 경우에는 ‘사회활동의 부족’이 70.8%(97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타인의 인식부족’이 51.8%(71명), ‘여가활동의 부족’, ‘대인관계의 축소’, ‘사회적 차별’이 각각 51.1%(70명), ‘지지집단의 부족’이 32.8%(45명), ‘기타’가 5.1%(7명)의 순서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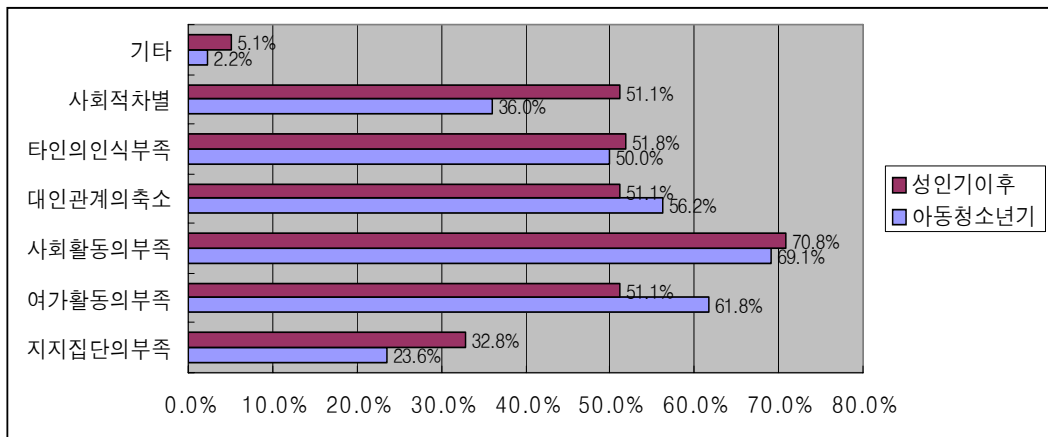
아동청소년기와 성인기 이후의 보호자들이 겪는 사회적 어려움 비교해 보면 여가활동의 부족을 호소하는 경우는 아동청소년기가 약간 많고, 사회적 차별을 지적하는 경우는 성인기 이후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4-10> 생애주기별 사회적 어려움

(단위 : %(명))

구 분	전체	생애주기별	
		아동청소년기	성인기 이후
지지집단의 부족	27.6 (87)	23.6 (42)	32.8 (45)
여가활동의 부족	57.1 (180)	61.8 (110)	51.1 (70)
사회활동의 부족	69.8 (220)	69.1 (123)	70.8 (97)
대인관계의 축소	54.0 (170)	56.2 (100)	51.1 (70)
타인의 인식부족	50.8 (160)	50.0 (89)	51.8 (71)
사회적 차별	42.5 (134)	36.0 (64)	51.1 (70)
기타(경제적 어려움 등)	3.5 (11)	2.2 (4)	5.1 (7)

주) 다중응답의 결과임.



[그림 4-8] 생애주기별 사회적 어려움

#### 4) 지적장애 자녀로 인한 가족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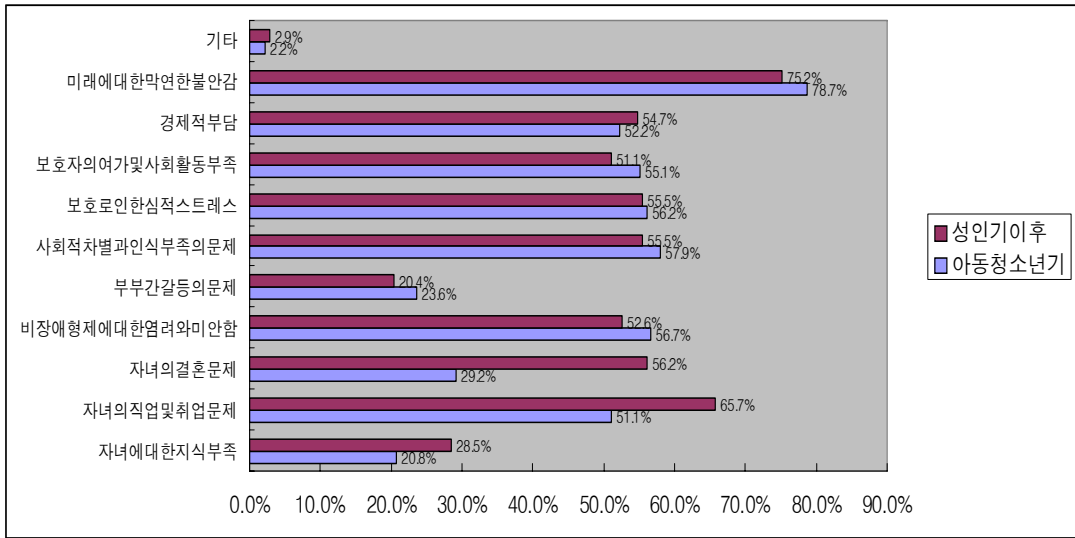
지적장애 자녀로 인하여 경험하는 가족의 어려움에 대하여 다중응답으로 질문한 결과 <표 4-11>과 같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77.1%(243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의 직업 및 취업문제’는 57.5%(181명), ‘사회적 차별과 인식부족의 문제’가 56.8%(179명), ‘보호로 인한 심적 스트레스’가 55.9%(176명), ‘비장애형제에 대한 염려와 미안함’이 54.9%(173명), ‘보호자의 여가 및 사회활동 부족’과 ‘경제적 부담’이 각각 53.3%(168명), ‘자녀의 결혼문제’가 41.0%(129명), ‘자녀에 대한 지식 부족’이 24.1%(76명), ‘부부간 갈등의 문제’가 22.2%(70명), ‘기타(교우관계, 교육문제, 부모사후대책 등)’가 2.5%(8명)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4-11> 생애주기별 가족의 어려움

(단위 : %, 명)

구 분	전체	생애주기별	
		아동청소년기	성인기 이후
자녀에 대한 지식 부족	24.1 (76)	20.8 (37)	28.5 (39)
자녀의 직업 및 취업문제	57.5 (181)	51.1 (91)	65.7 (90)
자녀의 결혼문제	41.0 (129)	29.2 (52)	56.2 (77)
비장애형제에 대한 염려와 미안함	54.9 (173)	56.7 (101)	52.6 (72)
부부간 갈등의 문제	22.2 (70)	23.6 (42)	20.4 (28)
사회적 차별과 인식부족의 문제	56.8 (179)	57.9 (103)	55.5 (76)
보호로 인한 심적 스트레스	55.9 (176)	56.2 (100)	55.5 (76)
보호자의 여가 및 사회활동 부족	53.3 (168)	55.1 (98)	51.1 (70)
경제적 부담	53.3 (168)	52.2 (93)	54.7 (75)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77.1 (243)	78.7 (140)	75.2 (103)
기타(교우관계 등)	2.5 (8)	2.2 (4)	2.9 (4)

주) 다중응답의 결과임.



[그림 4-9] 생애주기별 가족의 어려움

생애주기별로 가족의 어려움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동청소년기의 자녀를 둔 경우에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78.7%(140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적 차별과 인식부족의 문제’가 57.9%(103명), ‘비장애형제에 대한 염려와 미안함’이 56.7%(101명), ‘보호로 인한 심적 스트레스’가 56.2%(100명), ‘보호자의 여가 및 사회활동 부족’이 55.1%(98명), ‘경제적 부담’이 52.2%(93명), ‘자녀의 직업 및 취업문제’는 51.1%(91명), ‘자녀의 결혼문제’가 29.2%(52명), ‘부부간 갈등의 문제’가 23.6%(42명), ‘자녀에 대한 지식 부족’이 20.8%(37명), ‘기타(교우, 교육문제 등)’가 2.2%(4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인기 이후 자녀를 둔 경우에도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75.2%(103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의 직업 및 취업문제’는 65.7%(90명), ‘자녀의 결혼문제’가 56.2%(77명), ‘사회적 차별과 인식부족의 문제’와 ‘보호로 인한 심적 스트레스’가 각각 55.5%(76명), ‘경제적 부담’이 54.7%(75명), ‘비장애형제에 대한 염려와 미안함’이 52.6%(72명), ‘보호자의 여가 및 사회활동 부족’이 51.1%(70명), ‘자녀에 대한 지식 부족’이 28.5%(39명), ‘부부간 갈등의 문제’가 20.4%(28명), ‘기타(교육, 부모사후대책문제)’가 2.9%(4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기와 성인기 이후의 보호자들이 지적장애 자녀로 인하여 경험하는 가족의 어려움을 비교해 보면 아동청소년기에 비해 성인기 이후의 보호자들이 자녀의 직업 및 취업문제와 자녀의 결혼문제를 지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성인기 이후 연령 지적장애인들이 결혼 적령기 또는 시기를 넘긴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 5) 지적장애인 위치확인시스템 설치 필요성

지적장애 자녀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위치확인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가를 묻는 질문에서 <표 4-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필요하다’는 응답자 94.0%(296명)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필요 없다’는 응답자가 6.0%(19명)으로 나타났다.

생애주기별로 위치확인시스템 구축에 대한 필요성 정도를 살펴보면, 아동청소년기인 경우에는 위치확인시스템 설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97.8%(174명), ‘필요 없다’는 응답자가 2.2%(4명)이었다. 성인기 이후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89.1%(122명), ‘필요 없다’는 응답이 10.9%(15)로 아동청소년기 지적장애인 보호자들이 위치확인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2> 생애주기별 지적장애인 위치확인시스템 설치 필요성

(단위 : %(명))

구 분	전체	생애주기별	
		아동청소년기	성인기 이후
필요하다	94.0 (296)	97.8 (174)	89.1 (122)
필요 없다	6.0 (19)	2.2 (4)	10.9 (15)
계	100.0 (315)	100.0 (178)	100.0 (137)

장애등급별로 위치확인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정도를 살펴보면 <표 4-13>와 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장애 1급의 경우가 95.4%(145명), 장애 2급은 93.2%(114명), 장애 3급이 90.2%(37명)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표 4-13> 장애등급별 지적장애인 위치확인시스템 설치 필요성**

(단위 : %(명))

구 분	전체	장애등급별		
		1급	2급	3급
필요하다	94.0 (296)	95.4 (145)	93.2 (114)	90.2 (37)
필요 없다	6.0 (19)	4.6 (7)	6.6 (8)	9.8 (4)
계	100.0 (315)	100.0 (152)	100.0 (122)	100.0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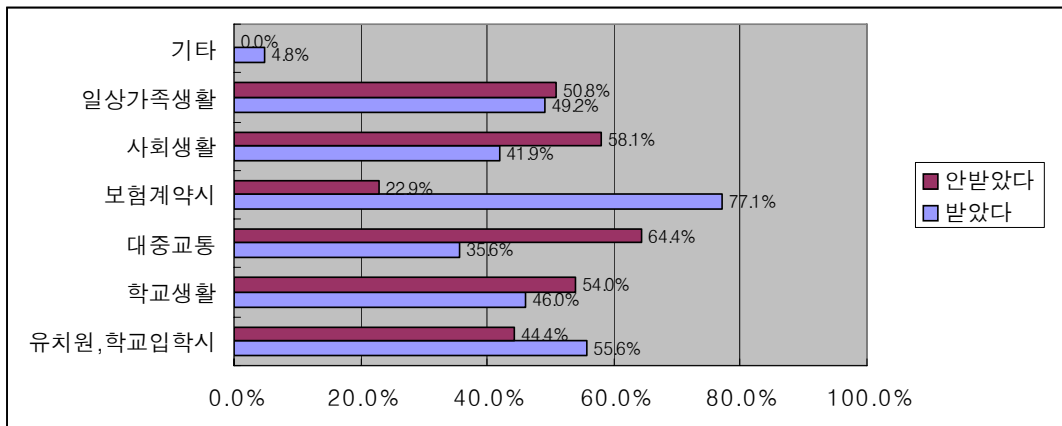
## 6) 차별대우 경험 여부

지적장애 자녀로 인해 차별 대우를 경험하였는가를 묻는 질문에 <표 4-14>와 같이 ‘보험계약시’에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응답률이 77.1%(243명)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유치원, 학교 입학시’에 차별을 ‘받았다’는 응답률이 55.6%(175명), 일상가족생활(친척,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차별을 ‘받았다’가 49.2%(155명), ‘학교생활(교사, 학우 등)’을 하면서 ‘차별을 받았다’는 응답률이 46.0%(145명), ‘대중교통(버스, 전철, 택시 등)이용 시’에 차별을 ‘받았다’는 응답률이 35.6%(112명), ‘사회생활(식당, 공연장, 상가 등)이용 시’에 차별대우를 ‘받았다’는 응답률이 41.9%(132명)이고, ‘기타(집단 활동, 직업선택 등)’에서 차별을 ‘받았다’는 응답률이 4.8%(15명)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4-14〉 차별대우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 분	차별경험 여부	
	받았다	안받았다
유치원, 학교입학시	55.6 (175)	44.4 (140)
학교생활(교사, 학우 등)	46.0 (145)	54.0 (170)
대중교통(버스, 전철, 택시 등)이용 시	35.6 (112)	64.4 (203)
보험계약시	77.1 (243)	22.9 (72)
사회생활(식당, 공연장, 상가 등)이용 시	41.9 (132)	58.1 (183)
일상가족생활(친척, 이웃과의 관계)	49.2 (155)	50.8 (160)
기타	4.8 (15)	



[그림 4-10] 차별대우 경험 여부

### 3. 장애자녀의 미래계획

#### 1) 지적장애 자녀의 미래와 관련한 준비

지적장애 자녀의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서 <표 4-15>와 같이 ‘아무런 준비를 못하고 있다’는 응답률이 55.6%(175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일상적인 생활기술 습득하는데 주력한다’는 응답률이 47.9%(151명), ‘재정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응답률이 30.8%(97명), ‘미래의 보호자를 정해주었다’는 응답률이 9.5%(30명), ‘자녀가 거주할 곳을 준비해 두었다’는 응답이 5.7%(18명), ‘기타(입소시설 검토, 자녀들과 협의 중 등)’가 1.6%(5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5> 생애주기별 지적장애 자녀의 미래계획 준비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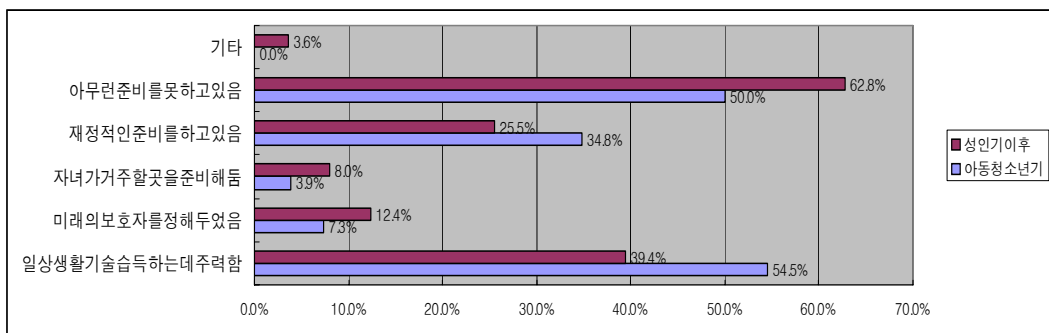
구 분	전체	생애주기별	
		아동청소년기	성인기 이후
일상적인 생활기술 습득하는데 주력함	47.9 (151)	54.5 (97)	39.4 (54)
미래의 보호자를 정해두었음	9.5 (30)	7.3 (13)	12.4 (17)
자녀가 거주할 곳을 준비해둠	5.7 (18)	3.9 (7)	8.0 (11)
재정적인 준비를 하고 있음	30.8 (97)	34.8 (62)	25.5 (35)
아무런 준비를 못하고 있음	55.6 (175)	50.0 (89)	62.8 (86)
기타	1.6 (5)	-	3.6 (5)

주) 다중응답의 결과임.

생애주기별로 지적장애 자녀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아동청소년기의 경우에는 ‘일상적인 생활기술 습득하는데 주력한다’는 응답이 54.5%(97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아무런 준비를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0.0%(89명), ‘재정

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는 응답이 34.8%(62명), ‘미래의 보호자를 정해두었다’ 는 응답이 7.3%(13명), ‘자녀가 거주할 곳을 준비해 두었다’ 는 응답이 3.9%(7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인기 이후인 경우에는 ‘아무런 준비를 못하고 있다’ 는 응답이 62.8%(86명)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일상적인 생활기술 습득하는데 주력한다’ 는 응답이 39.4%(54명), ‘재정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는 응답이 25.5%(35명), ‘미래의 보호자를 정해두었다’ 는 응답이 12.4%(17명), ‘자녀가 거주할 곳을 준비해 두었다’ 는 응답이 8.0%(11명), ‘기타’ 가 3.6%(5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기와 성인기 이후 지적장애 자녀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을 비교해 보면 일상적인 생활기술을 습득하는데 주력한다는 응답률은 아동청소년기가 다소 높고, ‘아무런 준비를 못하고 있다’ 는 응답률은 성인기 이후의 응답자가 약간 높게 나타났다.



[그림 4-11] 생애주기별 지적장애 자녀의 미래계획 준비

## 2) 지적장애 자녀의 미래와 관련 염려스러운 부분

지적장애 자녀의 미래와 관련하여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 무엇인가를 다중응답으로 묻는 질문에 <표 4-16>과 같이 ‘부모 사후문제’ 라는 응답이 77.8%(245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일상생활 지원문제’ 라는 응답이 64.8%(204명), ‘장래 재정문제’ 라는 응답이 63.2%(199명), ‘직업 및 취업문제’ 라는 응답이 62.9%(198명), ‘건강악화 문제’ 라는 응답이 41.3%(130명), ‘주거문제’ 라는 응답이 40.6%(128명), ‘결혼’ 이라는 응답이 40.3%(127명)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4-16〉 생애주기별 자녀의 미래관련 염려스러운 부분

(단위 :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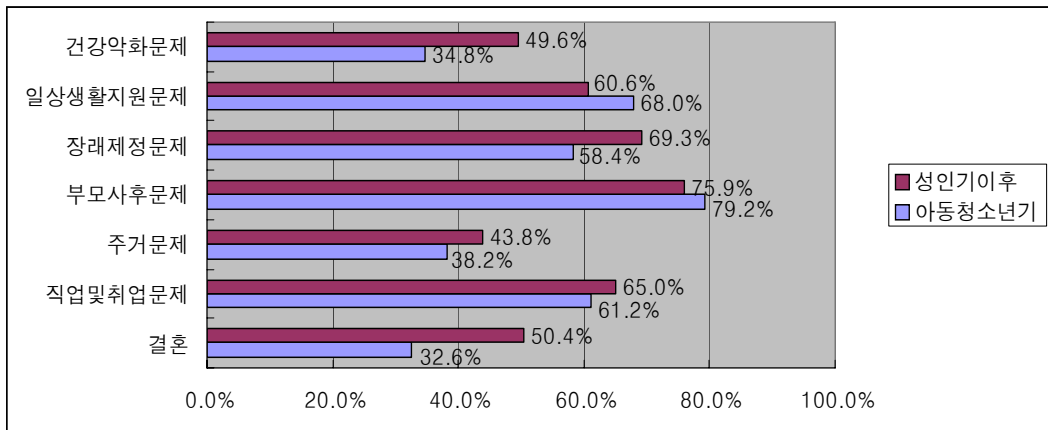
구 분	전체	생애주기별	
		아동청소년기	성인기 이후
결혼	40.3 (127)	32.6 (58)	50.4 (69)
직업 및 취업문제	62.9 (198)	61.2 (109)	65.0 (89)
주거문제	40.6 (128)	38.2 (68)	43.8 (60)
부모 사후문제	77.8 (245)	79.2 (141)	75.9 (104)
장래 재정문제	63.2 (199)	58.4 (104)	69.3 (95)
일상생활 지원문제	64.8 (204)	68.0 (121)	60.6 (83)
건강악화 문제	41.3 (130)	34.8 (62)	49.6 (68)
계	100.0 (315)	100.0 (178)	100.0 (137)

주) 다중응답의 결과임.

생애주기별로 지적장애 자녀의 미래와 관련하여 가장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기에 있는 경우에는 ‘부모 사후문제’ 라는 응답이 79.2%(141명)로 가장 높고, ‘일상생활 지원문제’ 라는 응답이 68.0%(121명), ‘직업 및 취업문제’ 라는 응답이 61.2%(109명), ‘장래 재정문제’ 라는 응답이 58.4%(104명), ‘주거문제’ 라는 응답이 38.2%(68명), ‘건강악화 문제’ 라는 응답이 34.8%(62명), ‘결혼’이라는 응답이 32.6%(58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적장애 자녀가 성인기 이후인 경우에는 ‘부모 사후문제’ 라는 응답이 75.9%(104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장래 재정문제’ 라는 응답이 69.3%(95명), ‘직업 및 취업문제’ 라는 응답이 65.0%(89명), ‘일상생활 지원문제’ 라는 응답이 60.6%(83명), ‘결혼’이라는 응답이 50.4%(69명), ‘건강악화 문제’ 라는 응답이 49.6%(68명), ‘주거문제’ 라는 응답이 43.8%(60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기와 성인기 이후 자녀의 미래 관련 가장 염려되는 것을 두 집단 간에 비교

해 보면 성인기 이후에서 ‘결혼’ 과 ‘건강악화문제’ 라는 응답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림 4-12] 생애주기별 자녀의 미래 관련 염려스러운 부분

### 3) 자녀 미래와 관련한 재정준비

지적장애 자녀의 미래와 관련한 재정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표 4-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혀 준비를 하지 못했다’ 가 55.9%(176명)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적금이나 예금을 들었다’ 는 응답이 23.8%(75명), ‘보험이나 연금에 가입했다’ 가 18.1%(57명), ‘부동산을 사두었다’ 가 2.2%(7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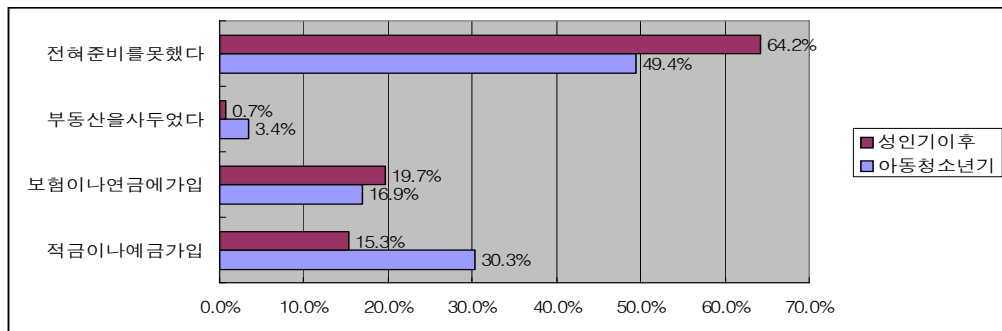
생애주기별로 미래와 관련한 재정준비를 하고 있는 지를 살펴보면, 아동청소년기의 경우에는 ‘전혀 준비를 하지 못했다’ 가 49.4%(88명)가 가장 높고, ‘적금이나 예금을 들었다’ 가 30.3%(54명), ‘보험이나 연금에 가입했다’ 가 16.9%(30명), ‘부동산을 사두었다’ 가 3.4%(6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인기 이후인 경우에도 ‘전혀 준비를 하지 못했다’ 가 64.2%(88명)가 가장 높고, ‘보험이나 연금에 가입했다’ 가 19.7%(27명), ‘적금이나 예금을 들었다’ 가 15.3%(21명), ‘부동산을 사두었다’ 가 0.7%(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기와 성인기 이후 자녀의 미래 관련 재정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비교해 보면 ‘전혀 준비를 못했다’ 는 응답은 성인기 이후에서 높고, ‘적금이나 예금에 가입했다’ 는 응답은 아동청소년기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4-17> 자녀의 미래관련 재정준비

(단위 : %(명))

구 분	전체	생애주기별	
		아동청소년기	성인기이후
적금이나 예금 가입	23.8 (75)	30.3 (54)	15.3 (21)
보험이나 연금에 가입	18.1 (57)	16.9 (30)	19.7 (27)
부동산을 사두었다	2.2 (7)	3.4 (6)	0.7 (1)
전혀 준비를 못했다	55.9 (176)	49.4 (88)	64.2 (88)
계	100.0 (315)	100.0 (178)	100.0 (137)



[그림 4-13] 자녀의 미래관련 재정준비

#### 4) 부모 사후에 자녀 생활형태 선호도

부모 사후에 선호하는 지적장애 자녀의 생활형태를 조사한 결과 <표 4-18>과 같이 ‘자녀에게 적합한 시설의 도움을 받으면 살게 하겠다’ 는 응답이 49.2%(155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결혼을 시켜서 배우자와 살게 하겠다’ 가 19.4%(61명), ‘형제·자매와 함께 살게 하겠다’ 가 11.4%(36명), ‘마음에 맞는 친구나 동료와 함께 살게 하겠다’ 가 10.2%(32명), ‘필요한 서비스 받으며 혼자 살게 하겠다’ 가 9.8%(3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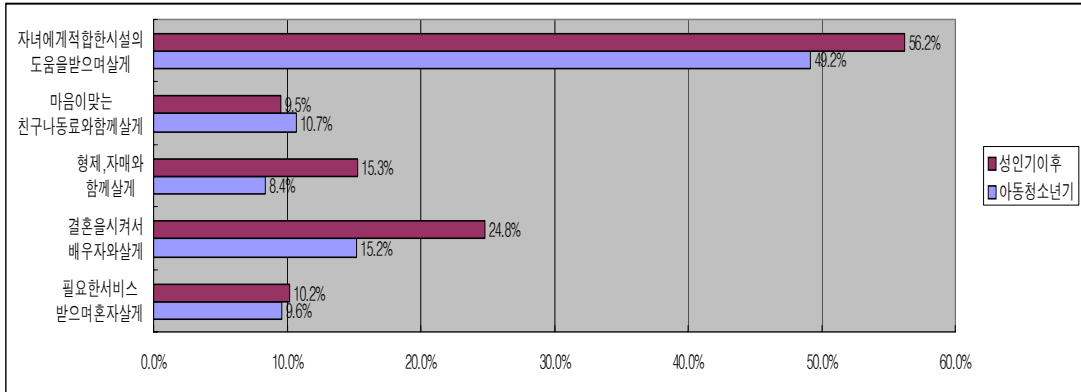


〈표 4-18〉 부모 사후에 선호하는 자녀의 생활형태

(단위 : %(명))

구 분	전체	생애주기별	
		아동청소년기	성인기이후
필요한 서비스 받으며 혼자 살게 하겠다	9.8 (31)	9.6 (17)	10.2 (14)
결혼을 시켜서 배우자와 살게 하겠다	19.4 (61)	15.2 (27)	24.8 (34)
형제·자매와 함께 살게 하겠다	11.4 (36)	8.4 (15)	15.3 (21)
마음에 맞는 친구나 동료와 함께 살게 하겠다	10.2 (32)	10.7 (19)	9.5 (13)
자녀에게 적합한 시설의 도움을 받으며 살게 하겠다	49.2 (155)	56.2 (100)	56.2 (55)
계	100.0 (315)	100.0 (178)	100.0 ( 135 )

생애주기별로 부모 사후에 선호하는 자녀 생활형태를 살펴보면, 아동청소년기의 경우에는 ‘자녀에게 적합한 시설의 도움을 받으면 살게 하겠다’가 56.2%(100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결혼을 시켜서 배우자와 살게 하겠다’가 15.2%(27명), ‘마음에 맞는 친구나 동료와 함께 살게 하겠다’가 10.7%(19명), ‘필요한 서비스 받으며 혼자 살게 하겠다’가 9.6%(17명), ‘형제·자매와 함께 살게 하겠다’가 8.4%(15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인기 이후의 경우에도 ‘자녀에게 적합한 시설의 도움을 받으면 살게 하겠다’가 56.2%(55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결혼을 시켜서 배우자와 살게 하겠다’가 24.8%(34명), 형제·자매와 함께 살게 하겠다’가 15.3%(21명), ‘필요한 서비스 받으며 혼자 살게 하겠다’가 10.2%(14명), ‘마음에 맞는 친구나 동료와 함께 살게 하겠다’가 9.5%(13명)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림 4-14] 부모 사후에 선호하는 자녀의 생활형태

### 5) 부모 사후 시설도움 받을 경우 선호하는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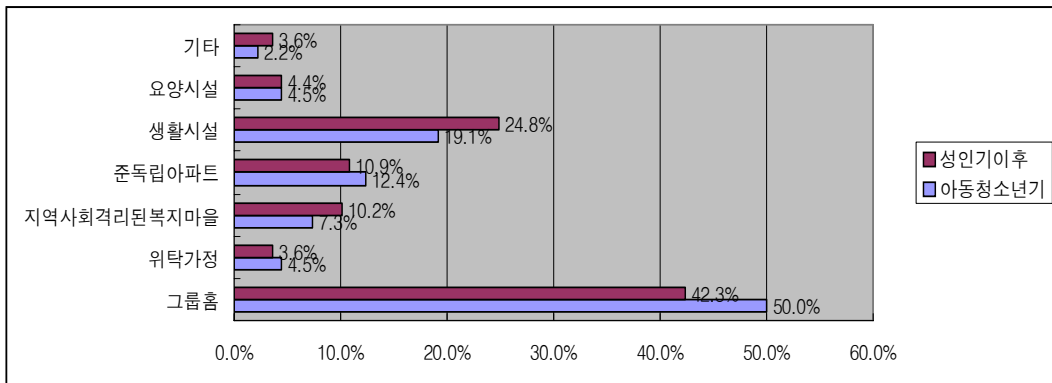
부모 사후에 시설의 도움을 받을 경우 선호하는 시설에 대한 질문에서 <표 4-19>와 같이 ‘그룹홈(10인 미만)’이라는 응답이 46.7%(147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생활시설’이 21.6%(68명), ‘준 독립아파트’가 11.7%(37명), ‘지역사회와 격리된 복지마을’이 8.6%(27명), ‘요양시설’이 4.4%(14명), ‘위탁가정’이 4.1%(13명), ‘기타(본인이 원하는 형태 등)’가 2.9%의 순으로 나타났다.

생애주기로 부모 사후에 도움 받는 경우 선호하는 시설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기의 경우에는 ‘그룹홈(10인 미만)’이라는 응답이 50.0%(89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생활시설’이 19.1%(34명), ‘준 독립아파트’가 12.4%(22명), ‘지역사회와 격리된 복지마을’이 7.3%(13명), ‘요양시설’과 ‘위탁가정’이 각각 4.5%(8명), ‘기타’가 2.2%(4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인기 이후의 경우에도 ‘그룹홈(10인 미만)’이라는 응답이 42.3%(58명)로 가장 높았으며, ‘생활시설’이 24.8%(34명), ‘준 독립아파트’가 10.9%(15명), ‘지역사회와 격리된 복지마을’이 10.2%(14명), ‘요양시설’이 4.4%(6명), ‘위탁가정’과 ‘기타’가 3.6%(5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9〉 부모 사후에 도움 받는 경우 선호하는 시설

(단위 : %(명))

구 분	전체	생애주기별	
		아동청소년기	성인기 이후
그룹홈(10인 미만)	46.7 (147)	50.0 (89)	42.3 (58)
위탁가정	4.1 (13)	4.5 (8)	3.6 (5)
지역사회 격리된 복지마을	8.6 (27)	7.3 (13)	10.2 (14)
준 독립아파트	11.7 (37)	12.4 (22)	10.9 (15)
생활시설	21.6 (68)	19.1 (34)	24.8 (34)
요양시설	4.4 (14)	4.5 (8)	4.4 (6)
기타	2.9 (9)	2.2 (4)	3.6 (5)
계	100.0 (315)	100.0 (178)	100.0 (137)



[그림 4-15] 부모 사후에 도움 받는 경우 선호하는 시설

## 6) 성년후견인 제도의 필요성

부모 사후에 자녀의 생활을 지원하는 성년후견인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표 4-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2.5%(292명)로 나타났으며, ‘필요 없다’가 7.3%(23명)로 나타났다.

생애주기별 성년후견인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동청소년기의 경우에는 ‘필요하다’가 92.5%(165명), ‘필요 없다’가 7.3%(13명), 성인기 이후의 경우가 ‘필요하다’가 92.5%(127명), ‘필요 없다’가 7.3%(10명)로 동일한 비율을 보였다.

**<표 4-20> 성년 후견인 제도의 필요성**

(단위 : %(명))

구 분	전체	생애주기별	
		아동청소년기	성인기 이후
필요하다	92.5 (292)	92.7 (165)	92.7 (127)
필요 없다	7.3 (23)	7.3 (13)	7.3 (10)
계	100.0 (315)	100.0 (178)	100.0 (137)

## 7) 선호하는 후견인

후견인제도가 필요하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선호하는 후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본 결과 <표 4-21>과 같이 후견인으로서 ‘형제·자매’가 좋다는 응답이 37.5%(118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장애인 관련 단체’가 22.2%(70명), ‘법조인’이 13.3%(42명), ‘시설이나 시설관계자’가 12.7%(40명), ‘기타(종교단체, 자원봉사자 등)’가 10.7%(34명), ‘친지나 지인’이 3.5%(1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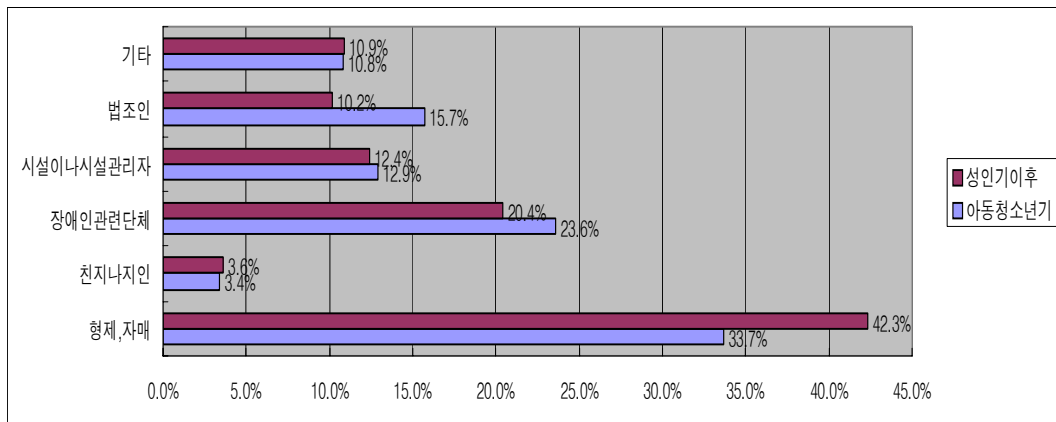
생애주기별로 선호하는 후견인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기의 경우에 ‘형제·자매’가 33.7%(60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장애인 관련 단체’가 23.6%(42명), ‘법조인’이 15.7%(28명), ‘시설이나 시설관계자’가 12.9%(23명), ‘기타’가 10.8%(19명), ‘친지나 지인’이 3.4%(6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인기 이후의 경우에도 ‘형

‘제·자매’가 42.3%(58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장애인 관련 단체’가 20.4%(28명), ‘시설이나 시설관계자’가 12.4%(17명), ‘기타(종교단체 등)’가 10.9%(15명), ‘법조인’이 10.2%(14명), ‘친지나 지인’이 3.6%(5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1〉 생애주기별 선호하는 후견인

(단위 : %(명))

구 분	전체	생애주기별	
		아동청소년기	성인기이후
형제·자매	37.5 (118)	33.7 (60)	42.3 (58)
친지나 지인	3.5 (11)	3.4 (6)	3.6 (5)
장애인관련 단체	22.2 (70)	23.6 (42)	20.4 (28)
시설이나 시설관계자	12.7 (40)	12.9 (23)	12.4 (17)
법조인	13.3 (42)	15.7 (28)	10.2 (14)
기타(종교단체 등)	10.7 (34)	10.8 (19)	10.9 (15)
계	100.0 (315)	100.0 (178)	100.0 (137)



[그림 4-16] 생애주기별 선호하는 후견인

## 4. 지적장애인 가족의 복지욕구

### 1) 가족을 위한 서비스 이용욕구

지적장애인 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욕구를 Likert(리커트) 4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표 4-22>와 같이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이 3.5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의료지원서비스’는 3.54점, ‘각종재활치료’가 3.42점, ‘정보제공 및 상담’이 3.32점, ‘권익증진서비스’가 3.28점, ‘가족의 휴식서비스 제공’은 3.23점, ‘외출 시 이동서비스’는 3.19점, ‘부모 역할 훈련’은 3.10점, ‘형제·자매 지원프로그램’이 3.13점, ‘장난감 및 교구, 보조 장비 등 양육에 필요한 내용 지원’이 2.95점, ‘가족상담’은 2.99점, ‘장애자녀 이성교제상담 및 자녀 결혼상담’과 ‘사례관리’가 각각 2.93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2> 가족을 위한 서비스 이용욕구

가족지원서비스	선호도 점수*
정보제공 및 상담(장애관련 지식, 프로그램, 정보제공)	3.32
각종재활치료(언어, 물리, 작업, 심리치료 등)	3.42
의료지원서비스(치과, 약물치료, 정신건강, 의료기지원)	3.54
사회성훈련프로그램	3.59
장난감 및 교구, 보조 장비 등 양육에 필요한 내용 지원	2.95
외출 시 이동서비스(교육, 치료, 외출 시)	3.19
장애자녀 이성교제상담 및 자녀 결혼상담	2.93
권익증진 서비스	3.28
형제·자매 지원프로그램(상담, 캠프, 멘토 지원)	3.13
부모 역할 교육(부모교육, 부모훈련)	3.10
가족상담(가족관계 갈등, 부모 상담)	2.99
가족의 휴식서비스 제공	3.23
사례관리	2.93

\*주) ① 매우 필요함= 4점, ② 필요한 편= 3점, ③ 필요하지 않은 편= 2점, ④ 전혀 필요 없음= 1점으로 환산한 점수임.

## 2) 대전광역시 지적장애인복지사업의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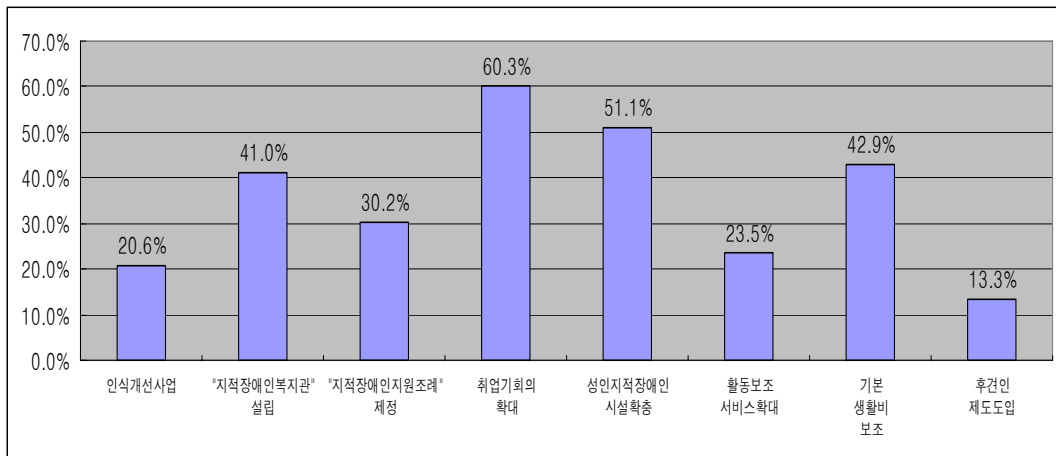
대전광역시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지적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로는 <표 4-23>과 같이 ‘보호작업장 등 취업기회의 확대’ 라는 응답이 60.3%(190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성인지적장애인 그룹홈, 주간기보호시설 확충’ 이 51.1%(161명), ‘기본생활비 보조’ 가 42.9%(155명), ‘지적장애인복지관 설립’ 이 41.0%(129명), ‘지적장애인 지원조례 개정’ 이 30.2%(95명),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가 23.5%(74명), ‘지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은 20.6%(65명), ‘후견인제도 도입’ 이 13.3%(42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3> 대전광역시의 지적장애인복지사업 우선순위

(단위 : %, 명)

구 분	사례수	비율	우선순위
지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65	20.6	7
“지적장애인복지관” 설립	129	41.0	4
“지적장애인 지원조례” 제정	95	30.2	5
보호작업장 등 취업기회의 확대	190	60.3	1
성인지적장애인 그룹홈, 주간기보호시설 확충	161	51.1	2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74	23.5	6
기본생활비 보조	155	42.9	3
후견인제도 도입	42	13.3	8

주) 다중응답의 결과임.



[그림 4-17] 대전광역시의 지적장애인복지사업 우선순위

### 3) 기타 지적장애인 가족을 위한 정책이나 프로그램

지적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한 본 설문조사의 마지막 문항에 ‘기타 지적장애인 자녀를 돌보고 있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나 제도 및 프로그램’을 개방형 질문으로 응답하게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다.

◀ 기타 지적장애인 가족을 위한 정책이나 프로그램 ▶

- 장애인부모 사망시 입소할 복지시설 확충
- 의료비지원, 의료시설 확충
- 장애인기초연금제도 도입
- 비장애인과 정기적인 행사로 사회인식개선
- 장애인평생교육원 설치
- 장애인부모를 위한 상담과 쉼터
- 방과후 취미프로그램 실시
- 장애부모 사후프로그램, 부모교육 및 상담
- 부모형제프로그램 실시
- 일자리와 주거공간마련
- 야간보호 등 24시간 서비스제공
- 주간보호시설 등 복지시설 이용료인하
- 부모소득과 관계없이 장애인수당 지급
- 장애인복지관 치료 대기기간 단축
- 장애인가족 정보교환 및 단체여가활동
- 장애인부모 일자리 우선제공
- 주간보호 정원 확대, 입소기간연장
- 사회적응프로그램 실시, 계절학기프로그램 확충
- 특수학교 졸업후 대책마련, 방과후교실운영
- 재활치료 확대, 지적장애인의 결혼과 성교육



## 제2절 지적장애인복지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지적장애인 특수학교 교감, 장애인보호작업장 원장, 장애인종합복지관 담당자 등 지적장애인복지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통하여 수집된 의견조사 내용을 요약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 1.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시스템 구축

우리나라 지적장애인들은 특성상 교육, 취업, 결혼, 취미 등 인간의 생애를 구성하는 과정에 필요한 욕구와 요소들이 제대로 충족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지적장애인들에게 충족돼야 하는 기본적인 생애 과정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잘못된 인식들도 여전히 남아 있다.

따라서 “지적장애인들의 인권침해 현실을 타파하고 지적장애인들도 전 생애의 필요한 과정에서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지적장애인의 생애주기별 변화에 따른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지적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이루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2. 지적장애인의 직업재활훈련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교육·훈련 매뉴얼 제작 및 보급, 훈련비 지원 확대

지적장애인 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각 지역사회기관에서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직업재활훈련 교육내용이 다르며, 교육·훈련 매뉴얼 또한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지적장애인 직업재활훈련 지도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매뉴얼이 매우 필요한 입장이다. 이에 매뉴얼 발간을 위한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지적장애인의 직업재활훈련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절실하다.

대부분의 지적장애인들은 고등학교의 정규 과정을 거치고 나면 대학을 진학하거나,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정은 그렇지 못하다. 직업훈련을 받는 지적장애인들 중 직업재활기금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의 훈련생으로 들어가면 직업적응훈련비를 지원받지만, 그렇지 못한 훈련생들은 훈련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개인의 사비를 내어서 훈련을 받아야만 한다. 따라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지적장애인들에게 직업재활을 할 수 있는 훈련비를 지원해주는 정책이 확립되길 바란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제 71조에 8항에서 직업적응훈련을 받는 훈련생들에게 훈련 수당 지급.

### 3. 지적장애인의 취업확대를 위한 지역사회 관공서 및 민간기관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원스톱 취업지원 구인·구직 전산망 개발

지적장애인들도 사회적 자립을 위한 취업을 원하지만, 장애인을 채용하려는 사업체에서는 경증장애인만 채용하려하고, 중증장애인의 채용은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취업을 하더라도 지적장애인에게 특별한 자격과 기능이 있지 않는 이상 열악한 환경의 사업체의 생산라인에서 낮은 급여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으로 장애인 채용과 사업체의 쾌적한 환경을 장려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입장에서는 아직도 매우 열악하다.

이에 현재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각 지역사회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구인/구직을 하나의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할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하여 취업을 원하는 지적장애인과 기관(복지관, 직업재활센터 등)은 전산에 구인을 신청하고, 사업체에서는 자신들의 요구 조건과 부합한 장애인을 채용하도록 하여 지적장애인의 취업률을 높이도록 복지정책으로 지원해 주길 바란다.

### 4. 지자체에서의 장애인 복지 일자리 확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만들어진 장애인복지 일자리(주12시간씩 월 48시간을 근무하면서 월 20만원을 받는 일자리)가 있는데, 인천시에서는 현재 6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과거라면 그냥 집에 있어야 하는 장애인들이 공공기관의 청소와 복지관의 노인도우미로 활동하고 선진국처럼 우체국에서 우편물 분리와 도서관의 사서보조 업무를 하면서 다양한 일자리를 경험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회적 인식의 부족으로 일반기업으로 확대 시행이 어렵고 채용분야도 제한적이어서 장애인이 장애인을 돌보는 사회적 복지일자리를 더 늘려야 할 것이다. 인천시의 경우에는 추가로 20명을 더 채용하고, 내년에는 월 급여를 25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함. 지적장애 영역의 복지 일자리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우리사회의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개선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동시에 장애인을 채용하는 공공기관의 영역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 5.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문화예술 예산 지원 및 전문적인 교육기관 설립

열악한 지적장애인의 문화예술을 적극 확대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대 편성, 체계적인 문화예술 접근 및 참여 정책을 추진을 위해 지자체내의 장애인의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전담팀 구성 및 정부차원의 장애인문화예술행사를 개최와 비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개선 필요.

따라서 지적장애인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사기를 고취시키고, 사회적인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인식제고와 전문인을 육성함으로써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장애인 일자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식의 확산이 필요하다. 얼마전에 미 볼티모어의 사회보장청에서 근무하는 재미교포 여성시각장애인 새러 에드워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서른살의 자폐성 장애인이 정식 채용하였다. 이처럼 장애인을 우선 고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앞장서야 할 것이고, 장애를 결함이나 결손, 약점으로 보고 장애를 경감시키는 재활도 필요하겠지만 지적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발굴하고 잠재능력을 더욱 개발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6.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제도 시행시기의 유예

정부는 2007년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편방안은 기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장애인 근로작업장과 보호작업장으로 유형을 재편하는 것이다. 개편된 직업재활시설 중에서 장애인 근로작업장은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유상적 임금을 지급하고 경쟁고용으로의 전이를 위한 역할을 하는 시설’로 정의되며, 보호작업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근로장애인의 2/3 이상에게 최저임금이상을 지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고 근로장애인 1인당 월평균임금은 최저임금 80%이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직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 능력 향상, 직무기능향상훈련, 그리고 보호적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유상적인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경쟁고용으로 전이를 위한 역할을 하는 시설’로 정의했다. 또 이러한 보호작업장은 ‘작업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근로장애인의 2/3이상에게 최저임금 40%이상을 지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고 모든 근로장애인에게 임금을 지급 근로장애인 1인당 월 평균 임금은 최저임금의 30%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함께걸음, 11월 23일자 인용). 이러한 최저임금 관련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10년부터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장애인 근로작업장과 보호작업장의 수입으로 최저임금의 80%와 30% 이상을 맞추기 어렵다. 이를 맞추기 위해 장애인 근로작업장과 보호작업장은 생산성이 낮은 지적장애인의 고용을 기피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시행시기를 일정기간 더 유예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7. 지적장애인 관련 복지시설 및 프로그램 확대

지적장애인들은 특수학교를 졸업한 후 진학할 수 있는 상급학교도 없고, 사회로 바로 진출할 수도 없고 가정에서 보호하기 곤란한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체계도 미흡하다. 시설보호와 가정보호의 중간체계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관,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의 부족으로 장애인에 대한 보호중단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고 서비스를 신청하는 지적장애인 이용자들이 많아 대기하는 시간과 기간이 길어서 시의 적절한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지적장애인 전용복지관 확대 및 사회복지관 등에서 지적장애인복지관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 제 5 장

---

### 조사결과 분석

.....

제1절 주요 조사내용 요약

제2절 정책제언

.....



##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본 연구는 대전지역 지적장애인의 복지증진대책 수립을 위해 관련 통계 및 제도들에 대한 검토와 수요자인 지적장애 자녀를 둔 부모 등 보호자들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연구는 대전지역 지적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표본크기는 315명으로 특수학교 재학 중인 지적장애인 171명과 보호작업장 근무 및 장애인복지관 이용 지적장애인 144명으로 이루어졌다. 자료 분석은 SPSS 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조사결과와 이를 토대로 정책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제1절 주요 조사내용 요약

#### 1. 일반적인 특성

조사대상자는 ‘남자’가 67.6%, ‘여자’가 32.4%로 여자보다 남자가 약 35% 정도 많았으며, 생애주기별로는 살펴보면 20세 미만 ‘아동청소년기’가 56.5%, 20세 이상 ‘성인기이후’가 43.5%를 보였다.

장애등급은 ‘1급’이 48.3%, 2급이 38.7%, 3급이 13.0%이며, ‘중복장애가 없다’가 61.0%이며 ‘중복장애가 있다’가 39.0%로 나타났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학교 및 복지시설은 ‘특수학교 재학 중’인 경우가 54.3%, ‘보호작업장 근무’가 25.4%, 장애인 복지관 이용이 20.3%의 순으로 나타났다.

#### 2. 장애정도 및 가족의 특성

##### 1) 일상생활 동작능력

조사대상 지적장애인의 일상생활 동작능력은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와 ‘대부분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32.4%,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다’가 22.5%, ‘혼자서 할 수 있다’가 12.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 동작능력을 리커트 4점 척도로 환산하여 살펴본 결과, 장애 정도가 심

한 장애 1급이 2.6점으로 타인 의존도가 가장 높고, 장애 2급은 1.75점, 3급은 1.58점의 순서로 나타났다.

## 2) 현재 거주형태

현재 거주형태는 ‘가족과 함께 집에서’ 생활한다가 93.9%, ‘조부모집에서’가 2.7%, ‘형제자매의 집에서’가 2.0%, 친척집에서가 1.4%의 순으로 나타났다.

## 3) 주관적 생활수준

주관적 생활수준은 전체적으로 ‘못산다’는 응답자가 33.0%이며, ‘잘산다’는 응답자는 7%로 대체적으로 주관적 생활수준을 낮게 인식하고 있다. 생애주기별로 살펴보면, 못산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성인기 이후(17.8%)보다 아동청소년기(31.5%)에서 더 높았다.

## 4) 추가되는 교육 및 양육비용

다른 비장애 자녀에 비해 지적장애 자녀의 교육과 양육을 위하여 매월 추가되는 비용은 49.5%가 20~50만원, 20만원 이하가 36.8%, 50~100만원이 10.2%, 100만원 이상이 3.5%의 순으로 나타났다.

## 5) 가장 부담이 많이 되는 비용

지적장애 자녀를 돌보면서 가장 부담이 되는 비용은 ‘장래에 발생할 비용’이 54.9%로 가장 높고, ‘치료비’가 41.3%, ‘교육비’가 33.0%, ‘기타(복지시설 이용료 등)’이 28.9%, ‘보호 및 간호비’가 24.0%, ‘교통비’가 9.5%, ‘상담 및 진단비’ 4.8%의 순으로 나타났다.

생애주기별로는 아동청소년기의 경우에는 ‘치료비’라는 응답이 53.4%, 성인기 이후는 ‘장래에 발생할 비용’이 57.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3. 장애자녀의 보호

#### 1) 주보호자

지적장애 자녀를 가장 많이 돌보는 주보호자는 ‘어머니’ 84.1%로 가장 높고, ‘조부모’가 4.8%, ‘아버지’ 및 ‘도우미(유급고용인)’가 3.2%, 형제·자매가 2.3%의 순으로 나타났다.

#### 2) 주보호자의 건강상태

주보호자의 건강상태는 건강이 나쁘다는 응답이 31.8%이고, 건강이 좋다는 응답이 67.0%이다.

#### 3) 지적장애 자녀로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어려움

지적장애 자녀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어려움은 ‘사회활동의 부족’이 69.8%, ‘여가활동의 부족’이 57.1%, ‘대인관계의 축소’가 54.0%, ‘타인의 인식 부족’이 50.8%, ‘사회적 차별’이 42.5%, ‘지지집단의 부족’이 27.6% 등으로 나타났다.

#### 4) 지적장애 자녀로 인한 가족의 어려움

지적장애 자녀로 인하여 경험하는 가족의 어려움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77.1%, ‘자녀의 직업 및 취업문제’는 57.5%, ‘사회적 차별과 인식부족의 문제’가 56.8%, ‘보호로 인한 심적 스트레스’가 55.9%, ‘비장애형제에 대한 염려와 미안함’이 54.9%, ‘보호자의 여가 및 사회활동 부족’과 ‘경제적 부담’이 각각 53.3%, ‘자녀의 결혼문제’가 41.0%, ‘자녀에 대한 지식 부족’이 24.1%, ‘부부간 갈등의 문제’가 22.2%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 5) 지적장애인 위치확인시스템 설치 필요성

지적장애 자녀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위치확인시스템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응답자 94.0%, ‘필요 없다’는 응답자가 6.0%로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다.

## 6) 차별대우 경험 여부

지적장애 자녀로 인해 차별 대우를 경험은 ‘보험계약시’에 77.1%, ‘유치원, 학교 입학시’에 차별을 ‘받았다’는 응답률이 55.6%, 일상가족생활(친척, 이웃과의 관계)에서 49.2%, ‘학교생활(교사, 학우 등)에서 46.0%, ‘대중교통(버스, 전철, 택시 등)이용 시’에 35.6%, ‘사회생활(식당, 공연장, 상가 등)이용 시’에 41.9%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 3. 장애자녀의 미래계획

### 1) 지적장애 자녀의 미래와 관련한 준비

지적장애 자녀의 미래에 대한 준비는 ‘아무런 준비를 못하고 있다’가 55.6%, ‘일상적인 생활기술 습득하는데 주력한다’가 47.9%, ‘재정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가 30.8%, ‘미래의 보호자를 정해주었다’는 응답이 9.5%, ‘자녀가 거주할 곳을 준비해 두었다’가 5.7%의 순으로 나타났다.

### 2) 지적장애 자녀의 미래와 관련 염려스러운 부분

지적장애 자녀의 미래와 관련하여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부모 사후문제’라는 응답이 77.8%, ‘일상생활 지원문제’가 64.8%, ‘장래 재정문제’가 63.2%, ‘직업 및 취업문제’가 62.9%, ‘건강약화 문제’가 41.3%, ‘주거문제’가 40.6%, ‘결혼’이 40.3%의 순서로 나타났다.

### 3) 자녀 미래와 관련한 재정준비

지적장애 자녀의 미래와 관련한 재정준비 ‘전혀 준비를 하지 못했다’가 55.9%, ‘적금이나 예금을 들었다’가 23.8%, ‘보험이나 연금에 가입했다’가 18.1% 등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기와 성인기 이후를 비교하면 ‘전혀 준비를 못했다’는 응답은 성인기 이후에서 높고, ‘적금이나 예금에 가입했다’는 응답은 아동청소년기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 4) 부모 사후에 자녀 생활형태 선호도

부모 사후에 선호하는 생활형태는 ‘자녀에게 적합한 시설의 도움을 받으면 살게 하겠다’가 49.2%, ‘결혼을 시켜서 배우자와 살게 하겠다’가 19.4%, ‘형제·자매와 함께 살게 하겠다’가 11.4%, ‘마음에 맞는 친구나 동료와 함께 살게 하겠다’가 10.2%, ‘필요한 서비스 받으며 혼자 살게 하겠다’가 9.8%의 순으로 나타났다.

#### 5) 부모 사후 시설도움 받을 경우 선호하는 시설

부모 사후에 선호하는 시설은 ‘그룹홈(10인 미만)’이 46.7%, ‘생활시설’이 21.6%, ‘준 독립아파트’가 11.7%, ‘지역사회 격리 복지마을’이 8.6%, ‘요양시설’이 4.4%, ‘위탁가정’이 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6) 성년후견인 제도의 필요성 및 선호도

부모 사후에 자녀의 생활을 지원하는 성년후견인제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92.5%이며, 선호하는 후견인은 ‘형제·자매’가 37.5%, ‘장애인 관련 단체’가 22.2%, ‘법조인’이 13.3%, ‘시설이나 시설관계자’가 12.7%, ‘기타(종교단체, 자원봉사자 등)’가 10.7% 등이다.

### 4. 지적장애인 가족의 복지욕구

#### 1) 가족을 위한 서비스 이용욕구

지적장애인 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욕구를 Likert(리커트) 4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이 3.59점, ‘의료지원서비스’는 3.54점, ‘각종재활치료’가 3.42점, ‘정보제공 및 상담’이 3.32점, ‘권익증진서비스’가 3.28점, ‘가족의 휴식서비스 제공’은 3.23점, ‘외출 시 이동서비스’는 3.19점, ‘형제·자매 지원프로그램’이 3.13점, ‘부모 역할 훈련’은 3.10점, ‘장난감 및 교구, 보조 장비 등 양육에 필요한 내용 지원’이 2.95점, ‘가족상담’은 2.99점, ‘장애자녀 이성교제상담 및 자녀 결혼상담’과 ‘사례관리’가 각각 2.93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 2) 대전광역시 지적장애인복지사업의 우선순위

대전광역시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지적장애인복지사업은 ‘보호작업장 등 취업기회의 확대’가 60.3%, ‘성인지적장애인 그룹홈, 주간기보호시설 확충’이 51.1%, ‘기본생활비 보조’가 42.9%, ‘지적장애인복지관 설립’이 41.0%, ‘지적장애인 지원조례 제정’이 30.2%, ‘활동보조서비스 확대’가 23.5%, ‘지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이 20.6%, ‘후견인제도 도입’이 13.3%의 순으로 나타났다.

## 제2절 정책제언

### 1. 지적장애인 취업기회 확대

이번 조사에서 대전광역시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지적장애인복지사업으로 ‘보호작업장 등 취업기회의 확대’를 가장 높게 꼽았다. 지적장애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회적일자리 제공, 직업재활시설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

지적장애인의 사회적일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기업을 확대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하면 사회적 기업은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민법상 법인, 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정의하고 있다. 지적장애인을 고용하는 사회적기업을 확대시키기 위해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안내 및 운영지원에 대한 컨설팅 등 사회적기업 지원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해야 한다<sup>6)</sup>.

한편으로 지적장애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직업재활시설이 지적하는 대표적인 어려움은 일거리 발굴과 생산품 판로개척 문제이다. 일거리 발굴을 위해 지역기업체 초청 간담회 개최, 직업재활시설과 기업체의 자매결연, 틈새직종 및 품목 개발 등이 필요하다. 또한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는 지역의 사회적기업 및 직업재활시설과 생

6) 대전광역시는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부록 3】을 참조할 것.

산제품 우선구매 및 판매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이들 기업을 지원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 2. 성인 주간보호시설 확대 설치

이번 조사에서 지적장애인의 일상생활 동작능력을 살펴본 결과 87.3%가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어 주보호자의 양육 및 보호부담이 과중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낮 동안 보호하여 장애인 가족의 항시 보호부담을 경감하고 가족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활동 및 경제활동을 참여할 수 있도록 주간보호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2009년 현재 대전지역에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9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곳에서 낮 동안 재활치료를 통한 독립생활능력 배양과 취미생활 및 정서 함양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성인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수요가 높은데 반하여 이들 시설의 대부분은 아동주간보호시설이다. 따라서 기존 서비스에 직업관련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등 실질적인 자립생활 촉진이 가능한 성인 지적장애인지원주간보호시설<sup>7)</sup>을 확대 설치할 필요가 있다.

## 3. 공동생활가정 시설 확충

본 연구 결과 지적장애인가족들은 부모 사후에 자녀가 시설의 도움을 받을 경우 가장 선호하는 시설이 공동생활가정(아동청소년기 50.5%, 성인기 이후 42.3%)이다. 공동생활가정은 탈시설화와 정상화이론에서 비롯된 시설로 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가정과 보다 가까운 환경을 제공하고 이용자의 사회적 자립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주거 형태의 하나이다. 대전지역에는 2009년 현재 18개소의 공동생활가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곳에서 80여명의 장애인이 재활교사의 지원으로 생활하고 있다. 향후 공동생활가정을 양적으로 확충하고 다양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토지구택공사 임대주택을 공동생활가정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7) 기존의 사회복지관 등 이용시설의 여유 공간을 주간보호시설로 활용하는 등 민간의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특히 성인 지적장애인지원주간보호시설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2009년 기준 1개소당 연간 운영비 지원기준은 57백만원이다.

#### 4. 사회복지관의 지적장애인 프로그램 특성화

대전지역에 있는 5개의 장애인복지관 중에서 시각장애인 종별복지관인 중구시립 산성종합사회복지관을 제외하면 지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관이 4개 소이다. 그러나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장애인복지관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어 접근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이 많아 대기하는 시간과 기간이 길어서 시의 적절한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장애인복지관 미설치 지역으로 지적장애인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에 지적장애인 프로그램을 특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복지사업 수행의 중심센터가 되고, 사회복지관은 센터의 지원을 받아 장애인프로그램 수행할 수 있다. 즉, 지적장애인이 동사무소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장애인복지관에서 대상자 접수(intake)를 하고, 이용 가능한 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대전광역시와 장애인복지관은 사회복지관에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예산 배분, 운영 지도 및 평가 등의 행정지원이 필요하다.

#### 5. 지적장애인 전용복지관 건립

지적장애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지적장애인들에게 전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종별복지관이 없다. 지적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는 생애 주기별로 지속되어야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졸업한 지적장애인은 학교를 졸업한 이후 복지서비스가 단절되어 여타 장애인에 비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전문화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지적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여 상담지도사업, 방과후 교실, 가족지원사업과 함께 성인기 지적장애인을 위한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구인구직상담, 결혼상담 등 개인의 특성과 생애주기에 맞는 전문교육과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그들이 잠재능력을 충분히 발휘해 지역사회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6. 지적장애인 지원조례 제정 검토

대전시가 2009년 2월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를 만들었다.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이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을 통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적장애인은 다른 장애와는 달리 자신의 권익을 스스로 주장하고 요구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학령기를 지나 성인이 되면 오갈 곳이 없어 평생 동안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중증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소규모 형태의 능력별, 수준별로 다양한 지원시설을 확대 신설하여 지원하는 ‘대전광역시 지적 장애인 지원조례’ 추진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지적장애인 부모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충분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야 한다.

## 7. 지적장애인 위치 확인시스템 구축

지적장애인의 안전보호와 실종을 예방하기 위하여 위치 확인시스템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sup>8)</sup>. 이번 조사에서 지적장애인 보호를 위해 위치 확인시스템을 구축 및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94.0%이며, 아동청소년기의 경우 필요성(97.8%)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적 및 자폐장애인과, 치매노인 등을 대상으로 위치 확인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sup>9)</sup>의 소요예산을 확인한 결과, 관제 시스템 구축에 17,500만원, 1인당 단말기 구입비 15만원, 통신비 월1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단기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장애인부터 지원하고 추후에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며, 일반 장애인은 실비로 위치 추적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8. 가족단위의 상담시스템 구축

지적장애인이 가족구성원이 되므로 인해 가족들은 다양한 심리·정서적 문제에

8)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에서 2009년 9월 3일 엄마와 함께 산책을 하다 실종됐던 자폐성 장애아동 이나은 어린이가 경찰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수색과 실종어린이 찾기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1개월 이상 지난 10월 8일 실종 장소에서 5k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되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였다(충청투데이, 2009. 10. 8일자).

9) 강남구가 지적·자폐장애인, 치매노인, 아동 등을 위한 위치추적서비스 'U-Safe 강남 시스템'을 11월부터 확대 운영한다. 강남구는 지난 5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가정의 지적·자폐장애인, 치매노인, 아동 등 220여명에 위치추적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이달부터 추가로 160명에게 위치추적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U-Safe 강남 시스템'의 주요기능은 ▲보호대상자가 평소 이동하는 지역을 벗어날 경우 보호자에게 SMS로 알려주는 안심 Zone 서비스 ▲특정일·특정시간에 이동한 경로를 알려주는 발자취 서비스 ▲특정장소·특정시간에 보호대상자가 특정 장소에 없을 경우 보호자에게 SMS로 알려주는 스케줄 Zone 서비스 ▲보호자 또는 집 등 특정 장소와 보호대상자와의 거리를 알려주는 거리알림 서비스 ▲긴급구조요청서비스 등이다(에이블뉴스, 2009. 11. 2일자).

봉착하게 된다. 어머니들의 경우, 자녀 양육을 전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실제적인 부담감과 함께 지적장애자녀의 욕구와 비장애인 자녀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심리적 갈등을 겪게 된다. 뿐만 아니라 며느리, 아내로서의 다양한 역할 부담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항시적인 우울, 불안, 위축감 등의 심리적 고통을 갖게 된다. 아버지들 또한 일반아동의 아버지에 비해 낮은 자존감, 우울증을 경험하기도 한다. 형제·자매의 경우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역할을 하도록 기대 받고 부정적인 감정표현을 못함으로써 내적 갈등을 경험하기도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주로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되어 오던 상담을 아버지와 형제, 조부모를 포함한 가족단위로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접근방법에서도 문제의 성격과 대상에 따라 가족구성원 개인별 상담과 둘 이상의 가족구성원들에게 제공하는 집단상담 등 형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경우처럼 가족 단위로 멘토를 파견하여 부모의 스트레스, 부부관계 관리, 부모 자녀관계 관리 등에 관한 상담과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오혜경 외, 2007). 이를 위해 대전지역에 현재 1개소인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연차적으로 확충하고 이곳의 상담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9. 성년후견인제도 의견수렴

지적장애인과 같이 중증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의 공통적인 걱정은 부모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자녀가 살아야할 문제이다. 본 조사에서 조사대상자의 92.7%가 성년후견인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현행 민법에서 친권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미성년자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후견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곧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를 지정후견인 또는 유언후견인이라고 한다. 지정후견인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는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 혈족의 순위로 그들 가운데 한사람이 후견인이 된다. 이를 법정후견인이라고 한다.

그러나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로 이분하는 현행 우리 법은 대상자의 판단 능력은 있지만 고도의 판단을 요하는 법률행위에 대한 판단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이용하기 어렵다. 금치산자는 후견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까지 후견인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현행 법률은 후견



인이 되는 순서를 법률에서 정해두고(법정후견인) 법정후견인이 없는 경우는 가정법원에서 선임한다. 고령자의 보호를 업무로 하는 사회복지기관과 같은 법인은 후견인이 될 수 없고 부부관계가 원만한자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1순위로 배우자가 후견인이 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처럼 성년후견인제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행 민법상의 한정치산, 금치산제도의 폐지에 따른 혼란과 신설되는 성년후견인제도의 복잡함, 조문배열의 변경에 따라 이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민법외의 다른 법률의 추가개정으로 법적 안정성과 법체계상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중 법 앞에서의 평등권을 다루고 있는 제12조를 근거로 성년후견인제가 장애인의 법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도입에 반대하는 주장도 있다(인천장애인대학총동문회(<http://cafe.daum.net/incowalkunimembersip>)).

따라서 우리 지역에서도 법률의 개정 또는 특별법의 제정으로 검토하게 될 성년후견인 제도는 직접 당사자인 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본인 보호의 이념’은 물론 ‘자기결정권의 존중’ ‘자존능력의 활용’ ‘정상화’ 등의 이념이 적극 반영된 성년후견 법률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책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직접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 10. 인식개선사업 추진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장애인 고용, 교육, 정보접근, 건강 등의 영역에서 장애인들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보험계약 시 77.1%, 유치원·학교 입학 시 55.6%, 일상가족생활(친척, 이웃과의 관계)에 49.2%, 학교생활에서 46.0%, 사회생활에서 41.9%가 차별대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지적장애인과 가족을 자주 접촉하는 의료진이나 교사,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지적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차별 관련 전문강사를 위촉하여 초·중·고교 재학생 및 교사, 의료인력 등 서비스업 종사자, 기업체, 인재교육원의 공무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한편으로 장애체험행사 장애인 이해 책자 발행, 캠페인, 공익광고 등 지속적인 홍보와 활동으로 지적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선경(2002), “정신지체아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대전광역시(2003),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발전중장기계획」.
-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9년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 송선권(2004), “정신지체 자녀의 평생계획에 관한 연구: 전주시 정신지체 장애인 부모를 중심으로” 한일장신대학교 국제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현철(2008),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혜경·백은령·한민우(2007), 「지적장애인 가족지원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 한국 지적장애인복지협회.

## 부 록

---

- 
1. 대전광역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현황
  2. 대전광역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현황
  3.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 지적장애인 가족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설문지
-



## 【부록 1】 대전광역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현황

(단위: m<sup>2</sup>, 명)

시 설 명	소재지	시설규모	이용자		직원	주요내용
			정원	현원		
공동생활가정	18개소		119	80	34	
한우리쉼터 (273-6490)	동구 신상동 292-10	181.5m <sup>2</sup>	8	8	3	그룹홈
(283-6490)	동구 용운동 용방마을@ 308-403	108m <sup>2</sup>	4	4	2	그룹홈
희망의집 (627-8963)	동구 가양동 171-57	124.29m <sup>2</sup>	8	4	2	그룹홈
에벤에셀의집 (282-1112)	동구 판암동 579-13	178.26m <sup>2</sup>	8	5	2	그룹홈
주사랑쉼터 (274-3193)	동구 대성동 30 삼익세라믹105-505	84.97m <sup>2</sup>	7	2	2	그룹홈
베데스다 (526-6564)	중구 태평2동 364-32	88.9m <sup>2</sup>	8	4	2	그룹홈
좋은집한채 (242-8582)	중구 대흥동 452-37	130.95m <sup>2</sup>	6	4	2	그룹홈
좋은친구들 (282-6040)	중구 석교동 192-17	175.95m <sup>2</sup>	7	4	2	그룹홈
시온마을 (531-9423)	중구 옥계동 24-16	92.68m <sup>2</sup>	8	7	2	그룹홈
שלמחולל (257-8004)	중구 부사동 424-225	220.8m <sup>2</sup>	6	5	3	그룹홈
징검다리 (584-5035)	중구 산성동 159-1	233.43m <sup>2</sup>	8	6	2	그룹홈
편안한 쉼터 (584-7799)	중구 유천동 296-38	78.44m <sup>2</sup> (1층)	8	4	2	그룹홈
대전밀알의집 (484-1763)	서구 둔산2동 파랑새@ 102-1302	84.95m <sup>2</sup>	8	4	2	그룹홈
도토리 한알 (522-9457)	서구 용문동 268-39(401호)	78.69m <sup>2</sup>	4	4	2	그룹홈
행복공동체 (826-8591)	유성구 하기동 송림마을@ 405-902	66.11m <sup>2</sup>	5	3	1	그룹홈
해뜨는집 (620-8703)	대덕구 대화동 39-30	73.5m <sup>2</sup>	8	4	1	그룹홈
늘 품 (637-1837)	대덕구 비래동 106-2	301.8m <sup>2</sup>	4	4	1	그룹홈
섬 돌 (637-1831)	대덕구 증리동 155-13	93.78m <sup>2</sup>	4	4	1	그룹홈

자료 : 대전광역시(2009), 내부자료.

**【부록 2】 대전광역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현황**

(단위: 명)

시 설 명	소재지	시설설치	이용자		종사자	주요내용
			정원	현원		
주간보호시설	17개소		247	204	60	
명은주간보호센터 (632-7338)	동구 삼성동 280-18	‘01. 12. 13	15	14	5	장애아동주간보호
생명장애인주간 보호센터(286-9190)	동구 판암동 239	‘07. 6. 1.	15	14	4	장애인주간보호
산성종합복지관주간 보호센터(586-8033)	중구 산성동 120-18	‘02. 10. 18	12	12	3	장애아동주간보호
샤론원 (585-9525)	중구 산성동 136-3	‘03. 10. 15	15	12	3	장애아동주간보호
밀알주간보호 (221-0813)	중구 중촌동 369-11	‘04. 8. 5	15	13	4	장애인주간보호
나눔장애인 주간 보호센터(586-1500)	중구 문화동 27	‘07. 3. 15.	12	10	4	장애아동주간보호
도토리주간보호센터 (533-9457)	서구 가장동 53-13	‘05. 9. 12	10	10	3	장애인주간보호
관저종합사회복지관 주간보호센터(545-6810)	서구 관저동 1140	‘05. 12. 28	15	11	3	장애인주간보호
월평사회복지관주간 보호센터(488-5166)	서구 월평동 218	‘05. 12. 29	15	12	3	발달장애인주간보 호
정림발달장애인주간 보호센터(584-4451)	서구 정림동 637	‘08. 8. 22	15	10	3	장애인주간보호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주간 보호센터(543-5120)	유성구 용계동 319-1	‘99. 3. 1	15	14	3	장애아동, 성인주간보호
푸른초장 (862-3692)	유성구 신성동 209-6	‘04. 8. 23	13	10	3	장애아동주간보호
유성구장애인종합 복지관부설(822-3637)	유성구 죽동 600	‘05. 5. 10	15	13	3	장애아동주간보호
가나특수교육원 (637-3025)	대덕구 오정동 433-2	‘00. 5. 4	20	12	3	장애아동주간보호
로템나무주간보호센터 (622-0675)	대덕구 오정동 658-9	‘08. 9. 11	15	11	5	장애아동주간보호
대덕구사회복지관주간 주간보호센터(936-7344)	대덕구 덕암동 48-2	‘03. 4. 1	20	16	4	장애아동주간보호
대덕구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637-8848)	대덕구 연축동 307-4	‘08. 2. 2	10	10	4	장애인주간보호

자료 : 대전광역시(2009), 내부자료.

### 【부록 3】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09-10-09 조례 제 377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대전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등”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 사회적기업의 육성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적기업등의 육성을 위해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제과학국장, 복지여성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 지방노동관서의 사회적기업 업무담당관
3.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경제정책과장이 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사회적기업 육성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시장은 사회적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등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기업등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4. 재정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기업등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6. 시와 자치구, 유관기관·단체간 협력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기업등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 사항

③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 ①시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시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 및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③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시설비 등 지원)** 시장은 사회적기업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시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제9조(경영지원 등)** ①시장은 사회적기업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 지식, 기술 등을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등)** ①시장은 사회적기업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등은 지원자금을 지원계획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등은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 및 관계법령에 따라 지원사업비 사용내역 등 집행 결과를 매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등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시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획을 수립하거나 구매시 사회적기업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②시장은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기업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후견인제도 운영)** 시장은 사회적기업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및 경영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후견인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시장은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는 시 사업에 대해 사회적기업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할 수 있다.

**제14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시장은 지역내 민간기업·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역내 민간기업, 법인, 단체간 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참여확대 지원

**제15조(홍보 등)** 시장은 사회적기업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역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내 사회적기업등의 제품 및 서비스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샵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인식 확산

**부칙 (2009. 10. 09 조례 제37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록 4】 지적장애인 가족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설문지

기관부호		ID		

## 지적장애인 가족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대전발전연구원에서는 대전광역시의 지원으로 지적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장애인 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히 지적장애인은 일상생활처리능력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의 적응이 곤란하여 부모 등 가족의 부양부담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설문지는 대전지역 지적장애인 가족이 당면한 실태와 욕구를 파악하여 대전광역시 지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대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적장애인 가족의 복지대책을 위한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분석에만 사용됩니다.

2009. 10

대전광역시 • 대전발전연구원

연구책임자 : 장창수(대전발전연구원, 사회복지학 박사)

문의 전화 : 연구실 530-3545, HP: 010-5481-6872

1. 다음은 지적장애 자녀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1. 자녀의 연령은? (만 \_\_\_\_\_ 세)
2. 자녀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3. 자녀의 장애 등급은? (지적장애      급)
4. 자녀는 중복장애가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5. 자녀는 현재 어디에서 생활하고 있습니까?  
① 가족과 함께 집에서    ② 조부모집에서        ③ 형제·자매의 집에서  
④ 친척집에서                ⑤ 기타(구체적으로:                    )
6. 자녀는 일상적인 생활동작(개인위생, 목욕하기, 식사하기, 화장실 사용, 옷 입고 벗기 등)을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①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    ② 대부분 도움이 필요하다  
③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다        ④ 혼자서 할 수 있다

2. 지적장애 자녀의 가족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1. 귀댁의 생활수준은?  
① 매우 잘사는 편이다                    ② 잘사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못사는 편이다  
⑤ 매우 못사는 편이다
2. 다른 비장애 자녀에 비하여 지적장애 자녀의 교육과 양육을 위하여 1 개월에 얼마 정도의 비용이 더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20만원 이하                            ② 20만원 ~ 50만원  
③ 50만원 ~ 100만원                    ④ 100만원 이상
3. 지적장애 자녀를 돌보면서 가장 부담이 되는 비용을 2개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교통비                                ② 교육비(학습 지원, 예체능 교육비 등)  
③ 상담·진단비                        ④ 치료비(언어·물리·작업 치료 등)

- ⑤ 보호·간호비(보육시설, 도우미 이용 등)
- ⑥ 장래에 발생할 비용(시설입소를 위한 목돈 등)
- ⑦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

③ 다음은 지적장애 자녀의 보호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1. 지적장애 자녀를 가장 많이 돌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조부모
- ④ 형제·자매                            ⑤ 도우미(유급고용인)
- ⑥ 친척                                    ⑦ 기타(누구: \_\_\_\_\_ )

1-2. 지적장애 자녀를 가장 많이 돌보는 사람의 건강상태는?

- ① 매우건강하다                                ② 비교적 건강하다
- ③ 건강이 나쁜 편이다                                ④ 건강이 매우 나쁘다

2. 자녀를 돌보면서 겪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지지집단의 부족                                ② 여가활동의 부족                                ③ 사회활동의 부족
- ④ 대인관계 축소                                ⑤ 타인의 인식부족                                ⑥ 사회적 차별
-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3. 지적장애 자녀로 인해 가족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자녀 보호에 대한 지식 부족                                ② 자녀의 직업 및 취업문제
- ③ 자녀의 결혼문제                                ④ 비장애형제에 대한 염려와 미안함
- ⑤ 부부간 갈등의 문제                                ⑥ 사회적 차별과 인식부족의 문제
- ⑦ 보호로 인한 심적 스트레스                                ⑧ 보호자의 여가 및 사회활동 부족
- ⑨ 경제적 부담                                ⑩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 ⑪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4. 최근에 지적장애, 자폐성장애인이 실종되어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위치확인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필요하다                                ② 필요 없다



- ⑦ 건강악화 문제                      ⑧ 기타(구체적으로:                      )

**3. 귀 가족께서는 자녀의 미래와 관련한 재정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① 적금이나 예금을 들고 있다.                      ② 보험이나 연금에 가입했다.
- ③ 부동산을 사두었다.                      ④ 전혀 아무런 준비를 못하고 있다.
- ⑤ 기타(구체적으로:                      )

**4. 만약 부모님께서 돌아가신다면 자녀가 어떠한 형태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 ①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면서 혼자 살게 하고 싶다.
- ② 결혼을 시켜서 배우자와 함께 살게 하고 싶다.
- ③ 형제 · 자매와 함께 살게 하고 싶다.
- ④ 친지들과 함께 살게 하고 싶다.
- ⑤ 마음에 맞는 친구나 동료와 함께 살게 하고 싶다.
- ⑥ 자녀에게 적합한 시설의 도움을 받으며 살게 하고 싶다.
- ⑦ 기타(구체적으로:                      )

**5. 만약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자녀가 시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다음 중 어떤 형태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룹홈(10인 미만)                      ② 위탁가정                      ③ 지역사회와 격리된 복지마을
- ④ 준 독립아파트                      ⑤ 생활시설                      ⑥ 요양시설
- ⑦ 기타(구체적으로:                      )

**6. 최근 부모사후에 자녀의 생활을 지원해줄 수 있는 성년후견인 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후견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질문 5번으로 가세요

**6-1. 만약 예라고 응답하였다면 후견인은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형제 · 자매                      ② 친지나 지인                      ③ 장애인관련 단체
- ④ 시설이나 시설관계자                      ⑤ 법조인
- ⑥ 기타(구체적으로:                      )

㉔ 다음은 지적장애 자녀를 돌보는 가족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1. 가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① 전혀 필요 없음	② 필요하지 않은 편	③ 필요한 편	④ 매우 필요함
1. 정보제공 및 상담 (장애관련 지식, 프로그램, 정보제공)				
2. 각종재활치료 (언어, 물리, 작업, 심리치료 등)				
3. 의료지원서비스 (치과, 약물치료, 정신건강, 의료기지원)				
4. 사회성훈련프로그램				
5. 장난감 및 교구, 보조 장비 등 양육에 필요한 내용 지원				
6. 외출 시 이동서비스 (교육, 치료, 외출 시)				
7. 장애자녀 이성교제상담 및 자녀 결혼상담				
8. 권익증진 서비스				
9. 형제·자매 지원프로그램 (상담, 캠프, 멘토 지원)				
10. 부모 역할 교육 (부모교육, 부모훈련)				
11. 가족상담 (가족관계 갈등, 부모 상담)				
12. 가족의 휴식서비스 제공				
13. 사례관리				



2. 대전광역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지적장애인복지사업을  
3개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지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 ② “지적장애인 종합복지관” 설립
- ③ “지적장애인 지원조례” 제정
- ④ 보호작업장 등 취업기회의 확대
- ⑤ 성인 지적장애인 그룹홈,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확충
- ⑥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 ⑦ 기본 생활비 보조
- ⑧ 후견인제도 도입
- ⑨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3. 기타 지적장애인 자녀를 돌보고 있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  
나 제도, 프로그램 등이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

---

---

---

---

☘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



기본연구보고서 2009-16

---

## 대전지역 지적장애인 복지증진대책에 관한 연구

---

발행인 유 병 로

발행일 2009년 10월

발행처 대전발전연구원

302-846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본1길 39(월평동160-20)

전화: 042-530-3519 팩스: 042-530-3545

홈페이지 : <http://www.djdi.re.kr>

---

인쇄 : 제일문화사 TEL 042-672-5193 FAX 042-632-0606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